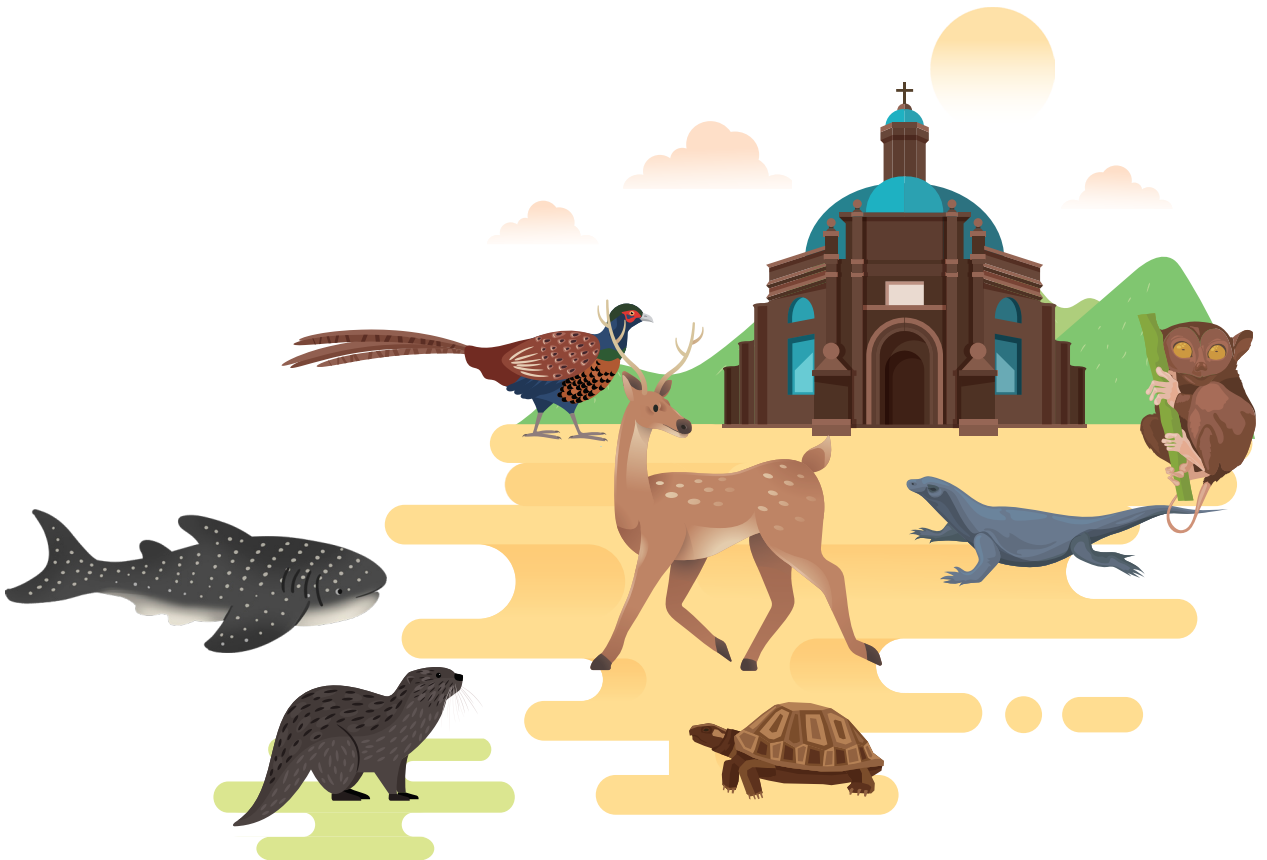


알기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17

필리핀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이 안내서는 국내 바이오업계 및 연구자가 외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이용하려는 때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외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이용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의 나고야의정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어표

필리핀 법률 용어

- **거래(Trade)** :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야생생물과 그 파생물 또는 부산물의 교환, 수출입, 매매에 종사하는 행위
- **경제적 중요종(Economically important species)** : 거래나 상업적 목적의 이용에 있어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는 종
- **고유종(Endemic species)** : 국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국내의 특정 지역 내에서만 발견되는 종 또는 아종
- **과학연구(Scientific research)** : 「야생생물법」 제15조 및 동법 이행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기초과학지식의 취득을 위해 생물자원의 체계적 수집, 연구, 잠재적 용도의 발견을 의미함
- **멸종우려종(Threatened species)** : 심각한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A류),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B류), 위급종(멸종위기 II 류) 및 개체군이 멸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야생생물종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용어
-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B류)(Endangered species)** : 심각한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A류) 만큼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태를 가져온 요인이 계속 작용하면 야생에서의 존속이 곤란한 종
- **무상허가서(Gratuitous permit)** : 야생생물을 수집하는 비상업적 과학활동 또는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허가
- **반출허가서(Export permit)** : 개인에게 야생생물을 필리핀에서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것을 인정하는 허가서
- **보전(Conservation)** : 야생생물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또는 서식지의 유지, 복원 및 증강
- **부산물 또는 파생물(By-product or derivatives)** : 원시 또는 가공된 형태로 야생생물에서 취한 모든 부분, 또는 야생생물에서 추출된 물질. 여기에는 박제, 동식물 표본이 포함됨
- **사전통고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 관련된 지역사회, 보호지역관리위원회(PAMB), 또는 사유지의 지주로부터 신청자가 취득하는 동의로서, 야생생물의 수집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생물탐사 활동의 의도와

대상 범위를 해당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완전하게 개시한 후에 취득하는 것

-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 : 인류에게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갖는 유전자원, 생물이나 그 일부, 개체군 및 기타 생태계의 생물학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개념
- **생물탐사(Bioprospecting)** : 오직 상업적 목적으로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을 연구·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생물탐사협정(BU; Bioprospecting Undertaking)** : 「야생생물법」 제14조에 따른 ‘약정’ 또는 ‘허가’로서, 생물탐사를 하려는 자원이용자에게 협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는 것
- **서식지(Habitat)** : 종 또는 아종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자연적으로 개체군을 형성한 장소 또는 환경
-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 다른 나라로부터 야생생물을 반입하는 것을 개인에게 인정하는 허가서
- **수집(Collection or collecting)** : 야생생물 및 그 부산물 또는 파생물을 모으거나 수확하는 행위
- **심각한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A류)(Critically endangered species)** : 매우 가까운 장래에 야생에서의 멸종 위험성이 매우 높은 종
- **야생생물(Wildlife)** : 모든 발달 단계에서의 동식물의 야생형 및 품종으로서 포획되거나 사육 또는 번식된 것을 포함
- **야생생물 수집허가서(Wildlife collector's permit)** : 야생 환경으로부터 특정 종의 야생생물을 상업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수집하기 위한 허가서
- **외래종(Exotic species)** : 국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종 또는 아종
- **유전물질(Genetic material)** :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
-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
- **자원이용자(Resource user)** : 적절한 기관과 체결한 생물탐사협정에

근거하여 필리핀 국내의 정해진 지역에서 생물탐사를 목적으로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자로서 공인이든 사인이든 불문하고 국내 또는 국외의 개인, 회사, 단체, 기관 또는 법인

- **자원제공자(Resource provider)** : 생물자원을 수집한 장소의 지역사회, 원주민, 보호지역관리위원회(PAMB), 사유지의 지주
-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통고승인(FPIC: Free and Prior Informed Consent)** : 각 원주민 문화 공동체, 또는 원주민(ICC/IPS)의 관습법 및 관행에 따라,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조작, 간섭 및 강제도 받지 않고, 대상이 되는 계획, 프로젝트 또는 활동의 의도와 범위를 해당 공동체의 주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완전하게 개시한 후에 얻은 해당 공동체 전체 구성원의 총의
- **전통적 이용(Traditional use)** : 토착민이 성문 또는 불문의 규칙, 용법, 관습, 전통적으로 준수해오고 받아들이며 인식해 온 관행에 따라 야생생물을 이용하는 것
- **취약종(멸종위기 II 류)(Vulnerable species)** : 심각한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A류),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B류) 만큼은 아니지만, 그 서식지역 전체에 걸쳐 유해한 요인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종
- **AWB** : 환경천연자원부(DENR)의 보호지역 야생생물국
- **DENR** : **환경천연자원부**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 **NCIP** : **국가원주민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on Indigenous Peoples)
- **NIPAS** : **국가통합보호지역제도**
(National Integrated Protected Area System)
- **PAMB** : 국가통합보호지역제도(NIPAS)법 및 보호지역을 설치하는 특별법에 따라 보호지역별로 창설된 **보호지역관리위원회**(Protected Area Management Board)
- **PCSD** :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
(Palawan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PITAHC** : 1997년 전통적 및 대체적 의약품법(TAMA)(공화국법 제8423호)에 근거해 창설된 **필리핀 전통 의료·대체 의료 연구소**(Philippine Institute for Traditional and Alternative Health Care)

나고야의정서 관련 용어

- **ABS**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 **Access(접근)** : 유전자원을 수집·이전·이용하는 일련의 절차 및 유전자원 샘플을 획득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 **Benefit-Sharing(이익공유)**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
- **Biological Diversity(또는 Biodiversity, 생물다양성)** :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 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함. 이는 종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
- **Biotechnology(생명공학기술)** : 특정 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시키기 위하여 생물계·생물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응용을 의미
- **Biological Resources(생물자원)** :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생물체 또는 그 부분·개체군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 구성요소를 포함
- **Benefit(이익)** :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수입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연구결과의 공유 등 비금전적 이익
- **Check point(점검기관)** :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통고승인, 유전자원의 출처, 상호합의조건 체결 등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 접수하는 기관으로 CBD 당사국은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지정 점검기관에 유전자원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함

- **Competent National Authority(CNA, 국가책임기관)** :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 ABS 이행 시 국가별로 국내법에 따라 접근 허가를 부여하거나,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의 증거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사전통고 승인의 획득과 상호합의조건 체결 절차와 요건을 고지함
- **Derivatives(파생물)** :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에서 비롯되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생화학적 화합물을 의미
- **Genetic Resources(유전자원)** :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
-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IPLCs, 토착지역공동체)** : 전통적으로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이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사회
- **Material Transfer Agreement(MTA, 물질이전계약)** : 유전자원의 이전 (Transfer)과 같은 물질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유형을 의미
- **Monetary Benefit-Sharing(금전적 이익공유)** : 금전적인 형태로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유전자원을 이용한 제품 수입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법
- **Mutually Agreed Terms(MAT, 상호합의조건)** :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제공자와 이용자가 상호간 합의한 조건
- **National Focal Point(NFP, 국가연락기관)** : CBD 사무국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을 원하는 신청자에게 사전통고 승인을 획득하는 절차와 상호합의조건을 확정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
- **Non-Monetary Benefit-Sharing(비금전적 이익공유)** : 기술이전, 공동 연구개발의 성과의 공유, 교육훈련 제공, 관련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등
- **Prior Informed Consent(PIC, 사전통고승인)**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받게 되는 접근 동의
- **Traditional Knowledge(전통지식)**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토착민지역사회의 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의미

Chapter

1

제1장 필리핀 개관	11
I. 필리핀의 생물다양성	12
II. 우리나라와의 경제·사회적 관계	13
III.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책 현황	14
IV. ABS 담당 국가기관	16

Chapter

2

제2장 필리핀의 ABS 관련 법령	17
--------------------------	----

Chapter

3

제3장 필리핀의 유전자원 접근절차	23
I. 유전자원 접근절차 개요	24
II. 상업적 이용의 경우	27
III. 비상업적 이용의 경우	28

Chapter

4

제4장 이익공유 절차 등	31
I. 개요	32
II. 금전적 이익공유	32
III. 비금전적 이익공유	33
IV. 상호합의조건	34

Chapter

5

제5장 제재 조항	35
I.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상 벌금 및 형벌	36
II. 생물탐사활동지침상 제재 및 벌금	38

Chapter

6

제6장 필리핀의 유전자원 취득 이후 절차 39

부록

1.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 44

2. 생물탐사활동지침 58

제 1 장

필리핀 개관



필리핀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필리핀 개관



I 필리핀의 생물다양성

- 필리핀은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높은 아열대국가
 - 지리적으로 해양부 동남아시아에 속해 있으며, 북쪽으로 대만, 남서쪽으로 말레이시아, 남쪽에는 인도네시아가 인접해 있음
 - 전 국가면적은 대략 300,000km²로 우리나라의 약 3배 정도 크기
 - ※ 국토는 약 298,170km²(약 7,100여 개 섬으로 구성), 해양은 약 1,830km²를 차지
 - 필리핀은 생물다양성부국(Megadiverse countries) 중의 하나
 - ※ 생물다양성 부국에는 전세계 동식물종의 70~80% 정도가 서식
 - 필리핀은 총 52,177종의 동·식물종을 보유
 - ※ 무사 발비시아나(*Musa balbisiana*, 야생 바나나의 일종) 등을 포함한 67%가 필리핀 원산종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다양성이 높음¹⁾
 - 필리핀은 최소 700종 이상의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이 서식
 - ※ 2004년 멸종위기동물목록을 작성하였으며, 42종의 육지 포유류, 127종의 조류, 24종의 파충류 및 14종의 양서류를 포함²⁾
- 필리핀 ‘동 민다나오 생물다양성 회랑지대(Eastern Mindanao Biodiversity Corridor)’의 남동부 지역에 있는 푸자다 반도(Pujada Peninsula)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은 능선에 형성된 ‘하미구이탄 산 야생생물보호구역(Mount Hamiguitan Range Wildlife Sanctuary)’은 다양한 동·식물종

1) intagrijournal.org

2) cbd.int

이 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서식지

- 이 구역은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는데, 다양한 고도에서 발달한 육상 및 수중 서식지의 전시장으로서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인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 중 8종은 오직 하미구이탄 산에서만 발견
-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수목 및 식물과 하미구이탄 산의 상징적인 존재인 필리핀독수리 (Philippine eagle)와 필리핀코카투(Philippine cockatoo, 앵무새의 일종)가 서식³⁾

II 우리나라와의 경제·사회적 관계

- 필리핀은 한국이 수교한 최초의 아세안 국가로서, 1949년 수교를 맺은 이래 70여 년간 인적 교류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음
 - 양국의 상호 방문객은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수교 70주년을 맞은 2019년은 ‘한-필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되어 양국 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계기를 마련
 -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다섯 번째 교역국이자 안정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는 국가
 - 또한 필리핀에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등의 진출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
 - 2021년 10월, 한국- 필리핀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투자·진출 및 교류·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필리핀은 다양한 종교와 인종에 대한 포용성을 바탕으로 중고소득국 (high-middle income country) 진입과 빈곤 없는 사회를 실현한다는 ‘국가비전 2040’(AmBisyon Natin 2040) 목표를 세우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3) heritage.unesco.or.kr

- ‘국가비전 2040’은 필리핀이 ‘2040년까지 중고소득국 진입, 국민의 건강한 삶, 빈곤 없는 중산층 사회와 신뢰사회 건설’ 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책
- 해외 파견 근로자, 매장량 세계 8위에 이르는 풍부한 천연자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 값싼 노동력 및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자 해소 노력과 경제개발 투자확대를 고려할 때,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나라로 평가됨

III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책 현황

- 필리핀은 1994년 1월 6일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이 된 이래, 2015년 9월 29일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하여 2015년 12월 28일 당사국 지위를 획득하였음
- ABS 관련 국내 행동계획 수립
 - 필리핀은 환경천연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생물다양성국(Biodiversity Management Bureau)을 통해 필리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Philippine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PBSAP))을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음
 - PBSAP(2015-2028)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필리핀 국가 로드맵으로서, 2028년까지 생물다양성의 복원과 효율적인 관리·보호 및 생태계 서비스 유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필리핀 사회를 이루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되게 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음
 - PBSAP는 필리핀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9개의 전략적 우선순위(Priorities)와 20개의 목표(Targets), 113개의 실행계획(Actions)으로 구성되어 있음
 - PBSAP의 목표 중에서 ABS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Targets 9, 11~20임⁴⁾

4) <https://chm.cbd.int/database/record?documentID=243371>

PBSAP(2015-2028)의 구성

- TARGET 1: By 2028, the conservation status of nationally and globally threatened species in the country from 2016 levels is maintained or improved.
- TARGET 2: By 2028, there will be no net loss in natural forest cover.
- TARGET 3: By 2028, there will be no net loss in presence and area distribution of live coral cover, mangroves, and seagrasses.
- TARGET 4: By 2028, over 50% of genetic diversity of cultivated plants and farmed and domesticated animals and wild relatives will be conserved or maintained.
- TARGET 5: By 2028, the population of migratory bird species identified in selected inland and coastal wetlands along th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 will be maintained.
- TARGET 6: By 2028, there will be a 5%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green spaces in the five largest cities.
- TARGET 7: By 2028, as a result of improved conservation,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key biodiversity areas will be enhanced.
- TARGET 8: By 2028, fish stocks of economically important species will be maintained.
- TARGET 9: By 2028, there will be an annual increase of at least 5% in biodiversity conservation related jobs (ecotourism, sustainable agriculture, ecosystem restoration).
- TARGET 10: By 2028, the key threats to biodiversity will be reduced, controlled or managed.
- TARGET 11: By 2028, there will be a 10% increase in agricultural areas devoted to all types of biodiversity-friendly agriculture.
- TARGET 12: By 2028, capacity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groups in terrestrial and marine protected areas/key biodiversity areas will be strengthened.
- TARGET 13: By 2028, 50% of local government units will have formulated and adopted the enhanced comprehensive land use plan using the revised Housing and Land Use Regulatory Board (HLURB) framework.
- TARGET 14: By 2028, 1 million hectares of degraded ecosystems will be restored and/ or will be under various stages of restoration.
- TARGET 15: By 2028, there will be at least 10 nationally recognized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 TARGET 16: By 2028, there will be improved conservation management of caves.
- TARGET 17: By 2020, relevant biodiversity conservation policies to address existing gaps are in place.
- TARGET 18: By 2028, there will be a 10% annual increase from the 2015 baseline in the number of schools, peoples' organizations, media organizations, local government units, private companies, policy makers, government offices that are aware and supportive of biodiversity, its importance, threats, and benefits of protecting it.
- TARGET 19: By 2028, there will be a 10% increase in total area from 2015 levels of terrestrial including inland wetlands protected areas managed through the National Integrated Protected Areas System (NIPAS) and other conservation measures (Indigenous Community Conserved Areas, Local Conservation Areas, Critical Habitats) that overlap with key biodiversity areas.
- TARGET 20: By 2028, there will be a 20% increase from 2015 levels in the coverage of established marine protected areas/sanctuaries across various aquatic habitats.

○ 아세안(ASEAN)과의 협력체계 구축

- 필리핀은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아세안의 Regional Capacity Building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프로젝트에 참여함

IV ABS 담당 국가기관

국가연락기관 (N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천연자원부 생물다양성관리국 Biodiversity Management Bureau(BMB),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DENR) - 홈페이지: https://bmb.gov.ph/ - 주소: Visayas Avenue, Diliman, Quezon City, Philippines - 이메일: director@bmb.gov.ph, bmb@bmb.gov.ph - 전화: +632 924 6031 • 담당자 - 이름: Theresa Mundita S. Lim - 직책: Director - 부서: 환경천연자원부 생물다양성관리국 - 전화: +632 9204486 - 팩스: +632 9204417 - 이메일: pawbdir@yahoo.com, munditalim@yahoo.com
국가책임기관 (C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 팔라완 지속가능개발위원회(Palawan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국가원주민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Indigenous Peoples)
국가점검기관 (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지정
관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보건연구윤리위원회(Philippine Health Research Ethics Board) • 필리핀 국가/지역 윤리위원회(National/Regional Ethical Committees) • 필리핀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the Philippines) • 국립문화예술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Culture and Arts)

제 2 장

필리핀의 ABS 관련 법령



필리핀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필리핀의 ABS 관련 법령

I ABS 관련 법령의 개요

- 필리핀 국내 법규 중 ABS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은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과 「생물탐사활동지침」임

필리핀의 ABS 관련 법령

	법령	시행
1	「야생생물자원·서식지의 보전 및 보호와 적정한 기금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이라 함) Act providing for th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wildlife resources and their habitats,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Republic Act No. 9147) ※ 비상업적 과학연구를 위한 생물자원의 수집 및 이용행위에 적용	2001
2	「생물탐사활동지침」 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Joint DENR-DA-PCSD-NCIP Administrative Order No. 1) ※ 상업적 목적의 생물탐사활동에 적용	2005
3	「생물·유전자원 및 그 부산물·파생물에 대한 탐사활동에 관한 지침과 규제체계에 관한 대통령령」 Executive order prescribing guidelines and establishing a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prospecting of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their by-products and derivatives, for scientific and commercial purposes and for other purposes ※ 연구계약체결의 원칙 및 계약 필수 내용, 토착공동체의 PIC 원칙 등 ABS 기본원칙과 체계 규정	1995
4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 공동이행규칙」 Joint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 (IRR) pursuant to Republic Act No. 9147: “An Act Providing for th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wildlife resources and their habitats,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Joint DENR-DA-PCSD Administrative Order No. 01)	2004

	법령	시행
5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 공동이행규칙의 효율화 및 절차 지침에 관한 행정명령」 DENR streamlining/procedural guidelines pursuant to the Joint DENR-DA-PCSD regulation of republic act no. 9147 otherwise known as “wildlife resources conservation and protection act” (DENR Administrative Order No. 2004-55)	2004
6	「육상멸종위기종 목록 및 그 범주와 기타 야생종 목록 구축에 관한 행정명령」 Administrative Order establishing the list of terrestrial threatened species and their categories, and the list of other wildlife species (DENR Administrative Order No. 2004-15)	2004
7	「토착민 및 토속문화공동체 권리의 확인·보호·증진, 국가토착민위원회의 설립, 이행체계 구축 및 기금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토착민권리법」”이라 함) Act to recognize,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indigenous cultural communities/indigenous peoples, creating a national commission on indigenous peoples, establishing implementing mechanisms,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Republic Act No. 8371)	1997

II ABS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

- 2001년 필리핀은 생태학적 균형을 촉진하고 생물학적 다양성을 향상시키고자 야생동물종과 그 서식지의 보존·보호를 위하여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을 제정·시행하였고, 2004년 관련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였음
- 이 법은 생물다양성보전에 관한 과학적 연구(비상업적 이용)의 개시 내지 지원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임
- 필리핀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은 총 6개 장 41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야생자원의 다양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요건을 담고 있음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 구성

구분	규정
1장 총칙	제1조~제4조
2장 용어 정의	제5조
3장 야생생물 자원의 보전과 보호	제6조~제26조
4장 불법행위	제27조
5장 벌금 및 형벌	제28조
6장 기타 규정	제29조~제41조

○ 생물탐사활동지침⁵⁾

- 2005년 1월 필리핀은 필리핀 생물자원의 보전, 개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탐사활동 지침」을 공표함
- 이 지침은 총 10개 장 35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정의규정을 포함한 총칙 규정과 함께 사전통고 승인(Prior Informed Consent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PIC) 신청 절차 및 이익 공유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순수 학문적 목적으로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과학적 연구(비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생물탐사활동 지침이 적용되지 않으며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이 적용됨⁶⁾
- 학술적 목적의 과학연구를 위해 취득한 생물자원을 양도하였을 때, 양수인이 해당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결과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생물탐사활동으로 간주하고 「생물탐사활동지침」을 적용함

생물탐사활동지침 구성

구분	규정	
1장 총칙	제1조	정책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적용제외
	제4조	목적
	제5조	용어의 사용
2장 제도적 장치	제6조	생물탐사협정(BU) 체결당사자
	제7조	담당기관
3장 절차와 요건	제8조	생물탐사협정 체결에 관한 기본 순서
	제9조	표준약관
4장 쿼터(quota)와 비용	제10조	샘플 수집
	제11조	신청료
	제12조	생태계 재생·이행 보증
5장 사전통고승인(PIC)	제13조	사전통고승인(PIC)에 관한 지침
6장 이익공유	제14조	기본 지침
	제15조	생물탐사료
	제16조	금전적 이익
	제17조	기타 이익

5) 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6) 「생물탐사활동지침」 제3조 제1항 d호.

구분	규정	
	제18조	지불금의 반환
	제19조	외국의 자원이용자에 의한 필리핀인 협력자의 지명
	제20조	공평한 이익공유
	제21조	상호 배타적인 약속
	제22조	수집지역의 진입
7장 의무준수	제23조	보고 요건
	제24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감시
	제25조	현재 보고
	제26조	외국에서의 감시
	제27조	시민단체의 참가
8장 부칙	제28조	클리어링하우스 체계
	제29조	자금
9장 제재 및 구제	제30조	분쟁해결
	제31조	제재 및 벌금
10장 최종규정	제32조	규정의 재검토 의무
	제33조	분리조항
	제34조	폐지규정
	제35조	효력

제 3 장

필리핀의 유전자원 접근절차



필리핀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필리핀의 유전자원 접근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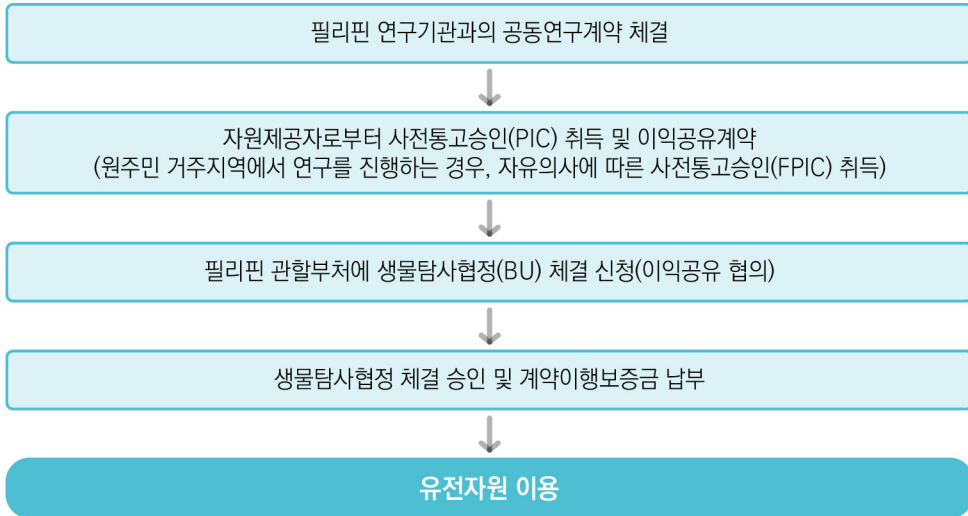


I 유전자원 접근절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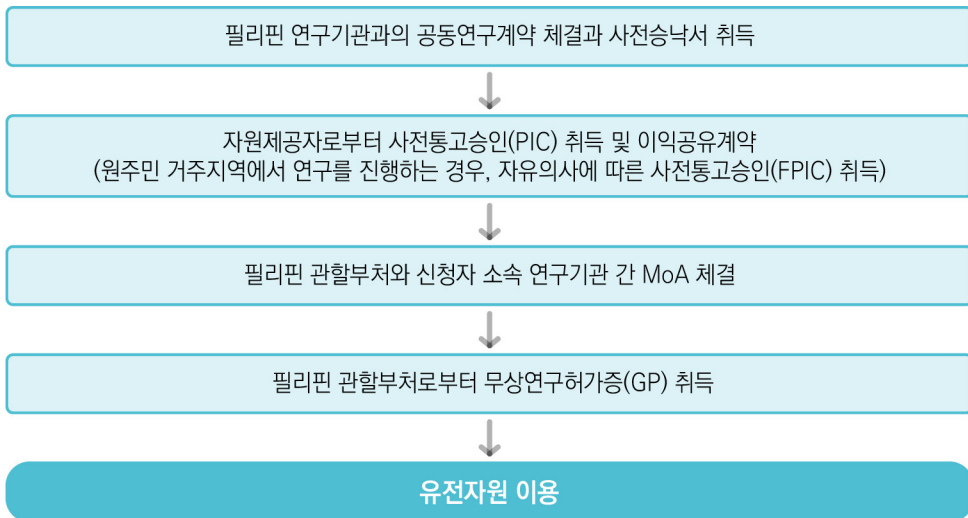
- 필리핀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전부터 자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규제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유전자원 이용의 추적관리를 위하여 자국 연구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음
- 접근허가의 대상이 되는 생물자원에는 필리핀의 모든 생물과 그의 부산물 또는 파생물을 포함함
 - 생물은 야생종, 재배·사육종, 외래종, 대학·연구기관의 컬렉션 등을 포함함
 - ‘부산물 또는 파생물’(by-product or derivatives)이란 야생생물에서 취한 모든 부분 또는 추출한 물질(생화학적 처리과정 또는 처리주기에서 간접적으로 생산되는 합성물)을 말함
- 해외 연구기관이나 외국인이 생물자원을 취득·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리핀 정부로부터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취득의 요건으로서, 필리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가 필수적임
 - 공동연구를 하지 않는 경우, 생물자원 샘플을 취득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 생물자원에 관한 허가권한을 가진 부처는 환경천연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 또는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DA)임
 - 또한 팔라완 주(州)의 경우에는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Palawan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CSD)가 관할권을 가짐

- 상업적 목적으로 생물자원에 접근할 경우, 생물탐사활동지침에 따라, 생물자원 제공자로부터 사전 통고승인(PIC)을 취득하고, 필요시 관련 공동체 등과 이익공유 조건을 협상한 후, 환경천연자원부 등 담당 부처와 생물탐사협정(Bioprospecting Undertaking: BU)을 체결해야 함
 - 생물탐사협정(BU)은 허가증에 상응하는 문서로서, 체결에 앞서 소정의 보증금 지급이 필요함
 - 원주민의 거주지역에서 유래하는 생물자원을 연구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사회로부터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통고승인(FPIC)을 취득하여야 함
- 비상업적 목적으로 생물자원에 접근할 경우, 생물탐사활동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야생생물 자원보전보호법의 적용을 받음
 - 이 경우,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에 의거, 필리핀 국내 연구자와의 공동연구가 요구되며, 생물자원 제공자로부터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하고, 필리핀 내 승인된 공동연구기관과 양해각서 (Memorandum of Agreement; MoA)를 체결하여, 환경천연자원부 등 담당부처로부터 무상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함
 - 다만, 연구결과를 추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물탐사로 간주되어 생물탐사활동지침의 요건이 적용됨
- 멸종이 우려되거나 그러한 위험에 있는 생물에 대해서는 관할부처 장관으로부터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필리핀의 생물자원의 연구결과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이 생겼을 경우, 총 매출의 2%를 중앙정부와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함
- 유전자원 접근절차 개요를 상업적 이용과 비상업적 이용으로 구분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① 상업적 이용(생물탐사(Bioprospecting))



② 비상업적 이용



II 상업적 이용의 경우

○ 필리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계약 체결

- 상업적 이용의 경우, 이용자는 필리핀 연구기관과 ABS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을 포함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동연구계약에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A(Memorandum of Agreement), CRA(Collaborative Research Agreement), PA(Project Agreement)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해당 연구에 적합한 형식의 계약을 선택할 것
-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

취득 조건	수량, 취득지역, 취득 방법 및 기간 등
이전 조건	제3자 이전 여부, 제공자 동의 필요 여부 등
이용 조건	전용(專用) 여부, 상용 이용의 경우 재계약, 이용 종료 후 처분법 등
이익 공유	공저, 금전적 이익공유, 실험·연구 기술 이전 등
역할 분담	연구에서의 역할, 제공국의 담당 부처에 대한 절차 등
보고 의무	연차 보고, 결과 보고 등
기타	연구실 간의 성과 데이터의 공유 방법, 데이터베이스에의 등록

○ 필리핀의 관할부처로부터의 생물탐사협정(secure)

- 관할 부처에 생물탐사협정(BU)을 신청함
- 생물탐사협정(BU)에 대한 허가 권한은 환경천연자원부(DENR) 장관, 농업부(DA) 장관 또는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이며, 생물자원 샘플의 종류, 취득 장소에 따라 관할부처가 다름
- 육상생물: 환경천연자원부(DENR)⁷⁾
- 해양생물: 어업 수산 자원국(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BFAR)⁸⁾, 농업부(DA)⁹⁾, 팔라완 주의 경우, 팔라완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¹⁰⁾
- 전통지식: 국가 원주민위원회(NCIP)¹¹⁾

7) denr.gov.ph
 8) bfar.da.gov.ph
 9) da.gov.ph
 10) pcsd.gov.ph

○ FPIC, PIC의 취득

- 원주민 거주지역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통고승인(Free and Prior Informed Consent: FPIC)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보호지역, 사유지의 생물자원 샘플에 대하여 채취장소의 관리자로부터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하여야 함

○ 생물자원의 반출

- 생물자원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ABS 이외의 법령에도 유의하여 반출 수속을 진행하여야 함
- 동식물검역증명서 제출 등 검역절차에 있어 미비가 있을 경우, 해당 생물자원 샘플은 폐기처분 받게 됨

III 비상업적 이용의 경우

○ 필리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계약 체결 및 사전승낙서 취득

- 외국인이 필리핀 생물자원에 대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려는 경우 필리핀 연구기관이 연구 및 채집활동과 제품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생물·유전자원 및 그 부산물·파생물에 대한 탐사활동에 관한 지침과 규제체계에 관한 대통령령」 제5조)
- 한국인 또는 한국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필리핀 생물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한국과 필리핀의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안에서 ABS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을 명기할 필요가 있음
- 공동연구계약에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A(Memorandum of Agreement), CRA(Collaborative Research Agreement), PA(Project Agreement)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해당 연구에 적합한 형식의 계약을 선택할 것

11) ncip.gov.ph

• 상호합의조건(MAT)

취득 조건	수량, 취득지역, 취득 방법 및 기간 등
이전 조건	제3자 이전 여부, 제공자 동의 필요 여부 등
이용 조건	전용(專用) 여부, 상용 이용의 경우 재계약, 이용 종료 후 처분법 등
이익 공유	공저, 금전적 이익공유, 실험·연구 기술 이전 등
역할 분담	연구에서의 역할, 제공국의 담당 부처에 대한 절차 등
보고 의무	연차 보고, 결과 보고 등
기타	연구실 간의 성과 데이터의 공유 방법, 데이터베이스에의 등록

- 또한 필리핀 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낙서'를 취득해야 함
 - ※ 법령에서의 영어 표현은 prior clearance from concerned bodies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사전승낙서) 또는 letter of consent of local institution (필리핀 연구기관의 동의서)
- 사전승낙서는 공동연구계약과는 별도 서류로 작성할 것

○ 필리핀 관할부처와의 합의각서(MoA) 체결

- 샘플을 관할하는 부처와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MoA)를 체결함
- 여기서 말하는 MoA는 연구기관간에 연결하는 공동연구계약과는 별도의 합의각서이며, 관할부처와 신청자가 소속하는 연구기관 간의 MoA를 가리킴
- 수행증명서(Affidavit of Undertaking) 또는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는 다음과 같은 조건(terms and condition)을 포함하여야 함
 - ① 연구결과, 논문 등을 활용한 파생기술 개발의 금지
 - ②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신청 시 관계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 ③ 연구 종료 시, 연구보고서 및 권장활동계획서(recommended plan of action) 제출
 - ④ 동물복지규약(animal welfare protocol)의 준수(필요시)

○ 필리핀 관할부처로부터 무상연구허가증(Gratuitous Permit: GP) 취득

- 허가 권한은 환경천연자원부(DENR) 장관, 농업부(DA) 장관 또는 팔라완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이며, 생물자원 샘플의 종류, 취득 장소에 따라 관할부처가 다름
- 육상생물: 환경천연자원부(DENR)

- 해양생물: 어업 수산 자원국(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BFAR), 농업부(DA), 팔라완 주의 경우, 팔라완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
- 전통지식: 국가원주민위원회(NCIP)

부처	관할 자원
환경천연자원부(DENR)	육상생물, 거북류(turtles and tortoises), 습지 서식 생물(악어, 물새, 양서류, 두공 등)
농업부(DA)	해양 중요 서식지, 해양생물(어류, 수생식물, 무척추동물, 해양 포유류(두공 제외) 등)
팔라완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	팔라완 주 서식 야생생물종

○ 지역이전허가(Local Transfer Permit: LTP) 취득

- 야생생물, 부산물, 파생물의 필리핀 국내 이전이 있는 경우, 환경천연자원부(DENR)의 생물다양성 관리국(BMB)으로부터의 지역이전허가(LTP) 취득이 필요

○ 반출허가증 취득

- 한국으로 생물자원의 샘플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생물을 관할하는 부처 중 하나에 반출 허가(Export Permit: EP)를 신청할 것
- 육상생물: 환경천연자원부(DENR)
- 해양생물: 어업 수산 자원국(BFAR), 농업부(DA), 팔라완 주의 경우, 팔라완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

○ 생물자원의 반출

- 생물자원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ABS 이외의 법령에도 유의하여 반출수속을 진행하여야 함
- 동식물검역증명서 제출 등 검역절차에 있어 미비가 있을 경우, 해당 생물자원 샘플은 폐기처분 받게 됨

제 4 장

이익공유 절차 등



필리핀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이익공유 절차 등

I 개요

- 생물탐사협정 신청자는 토착주민, 보호지역관리위원회(protected area management board), 지방정부 등 특정지역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개인 또는 기관의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함
 - 관련 공동체는 신청자와 이익공유 조건을 협상할 수 있음
 - 즉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있어 신청자는 자원제공자와 이익공유 조건을 협상한 후, 환경천연자원부 등 담당 부처와 생물탐사협정을 체결해야 함
- 필리핀 생물탐사활동지침에 따르면, 의무적인 생물탐사 비용, 로열티 지급, 선불지급금(up-front payment), 기타 비금전적 이익의 설정과 함께 세부적인 이익공유 조항이 생물탐사 계약에 포함되어야 함

II 금전적 이익공유

- 유전자원 이용자는 유전자원 수집기간 동안 선불지급금(자원제공지 출입비용 등)으로 자원제공자에게 구역 당 매년 미화 1천 달러를 지불해야 함. 다만, 필리핀 국적의 유전자원 이용자와 학생에 대하여는 경감된 금액을 적용함
- 유전자원 이용자는 생물탐사 계약을 통해 수집된 샘플을 이용하여 생산된 상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안, 상품의 총 매출액의 최소 2%를 매년 중앙정부 및 유전자원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함

- 지불 금액은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자원 이용자는 로열티 계상을 위해 연간 총 매출 결산 보고서를 계약기관에 제출해야 함
 - 자원이용자가 상품 판매자와 다른 경우에는, 자원 이용자가 상품 판매자의 매출 기록을 확보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할 책임이 있음
- 지불하는 금액의 25%는 중앙정부의 세입이 되어 환경천연자원부, 농업부, 팔라완주지속가능개발 위원회(PCSD)에 직접 지급되며, 나머지 75%는 직접 자원 제공자에게 지급됨.
- 생물탐사협정의 당사자인 정부기관이 하나 이상인 경우, 로열티에 대한 정부 기관별 지분은 동일한 비율을 적용함
 - 로열티 지불 일정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하고 생물탐사협정에 포함되도록 함

Ⅲ 비금전적 이익공유

- 자원 이용자와 제공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비금전적 이익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음
- 생물다양성 연구와 모니터링을 위한 시설
 - 자원 보존 활동을 위한 장비와 시설
 - 기술이전
 - 교육 시설을 포함하는 공식적인 연수
 - 지역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 의료서비스 제공
 - 자원의 현지 내(in situ) 보존과 개발 활동을 위한 역량 구축

IV 상호합의조건

- 계약보증 또는 합의각서를 체결함에 있어 최소한의 요건을 포함해야 함
 - 구체적으로 과학 연구의 결과물로부터 파생기술을 개발해서는 안 되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관련 기관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연구 종료 시점에 결과물과 제안된 실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포함되어야 함

필리핀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표준약관(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필리핀 생물탐사행위 지침」 부속서 I)

최저계약조건(Minimum terms and conditions)

- ① 표본에 대한 **위생검역 관리** 절차 준수
- ② 필리핀 국립중앙박물관 등 지정기관에 **바우처표본** 기탁
- ③ 국립식물유전자원연구소 등 지정기관에 **살아있는 표본의 전체** 기탁
- ④ 기탁된 표본에 대한 필리핀 국민의 접근 보장
- ⑤ 생물자원 수출 시 **CITES 및 관련 법령** 준수
- ⑥ 신물질, 세포주 등 수출 시 「중자산업개발법 이행규칙」 제42조 준수
- ⑦ 생물자원의 운반 시 관계당국의 수송허가 또는 우편통관 등 절차 진행
- ⑧ 필리핀 정부 및 자원제공자에 **상업화 정보의 공유**
- ⑨ 외국인의 접근 시 정부 또는 대학·연구기관 소속의 **내국인 연구자와의 공동연구협력(외국인 이용자의 비용 부담)**
- ⑩ 필리핀 고유종에 대한 **연구성과**는 필리핀 정부와 무상으로 **공유**
- ⑪ 필리핀 정부는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
- ⑫ 생물탐사협정 상의 이용자가 대리인 또는 단순 중개인인 경우 실제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관계당국이 검토(「생물탐사행위지침」 규정 준수 여부, 물질이전계약 체결 여부 등)

제 5 장

제재 조항



필리핀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제재 조항



I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상 벌금 및 형벌

- 야생생물, 부산물 및 파생물의 불법 채집·수렵·소지행위에 대한 처벌¹²⁾

대상 야생생물종 분류	벌칙사항
○ 심각한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A류)	2년 초과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페소 이상 30만 페소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B류)	1년 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페소 이상 20만 페소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취약종(멸종위기 II류)	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페소 이상 10만 페소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기타 멸종위기종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페소 이상 5만 페소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기타 야생생물종	10일 초과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백 페소 이상 2만 페소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야생생물종의 살처분행위에 대한 처벌¹³⁾

대상 야생생물종 분류	벌칙사항
○ 심각한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A류)	6년 초과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페소 이상 100만 페소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B류)	4년 초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페소 이상 50만 페소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12) 1페소=24.32원 (2022.10.기준)

13) 처벌의 예외로 인정된 경우 : (i) 정착부족 또는 토착문화공동체의 종교의식으로서 행하여진 경우, (ii) 야생생물이 치료가 불가능한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iii) 야생동물로 인해 받는 피해가 극심하여 살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iv)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v) 허가받은 연구의 수행 후 살처분하는 경우

대상 야생생물종 분류	벌칙사항
○ 취약종(멸종위기 II류)	2년 초과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페소 이상 30만 페소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기타 멸종위기종	1년 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페소 이상 20만 페소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기타 야생생물종	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페소 이상 10만 페소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야생생물 거래의 경우

대상 야생생물종 분류	벌칙사항
○ 심각한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A류)	2년 초과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페소 이상 30만 페소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B류)	1년 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페소 이상 20만 페소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취약종(멸종위기 II류)	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페소 이상 10만 페소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기타 멸종위기종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페소 이상 5만 페소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기타 야생생물종	10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백 페소 이상 2만 페소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모든 야생생물, 그 파생물 또는 부산물 및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 된 모든 장비, 도구 및 운송 수단은 사실상 정부에 몰수함

- 다만, 상기 수송수단의 소유권이 당해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 또는 해당 불법행위를 모르는 제3자에 있는 때에는 해당 수송수단을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음
- 위반자를 체포한 기관은, 압수 또는 회수한 모든 야생생물을 그 지역의 가장 가까운 야생생물 구호 센터(부처 소관)에 즉시 수송시킴
- 위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복역하여 벌금을 지불한 후에는 그 이상의 수속을 하지 않고 국외로 추방함

II 생물탐사활동지침상 제재 및 벌금

- 생물탐사협정(BU)의 규정에 위반이 있는 경우, 협정은 자동적으로 해제 또는 취소되며 수집한 소재 및 보증금이 정부에 의해 몰수되고, 특히 필리핀 위반자에 의한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은 영구적으로 금지함
 - 이 위반은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고 현행법에 의한 행정상 및 형법상의 제재조치를 부과함
 - 생물탐사협정(BU)을 체결하지 않고 생물탐사를 한 자에게는 「야생생물보전보호법」 제27조 (f)호 (야생생물, 부산물, 파생물의 불법 채집·수렵·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처벌규정(동법 제28조)을 적용함

제 6 장

필리핀의 유전자원 취득 이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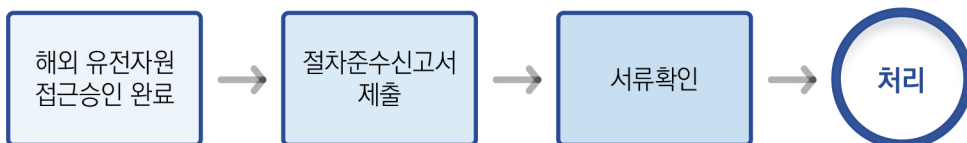


필리핀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필리핀의 유전자원 취득 이후 절차

- 필리핀에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허가를 받고 국내에서 해당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이용하려는 경우, 국내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 이용자는 제공국 법률 준수 사실을 신고해야 함
 - 단,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신고하므로, 제공국이나 제3국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 절차준수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 절차준수신고 대상 -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
단,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유전자원법 제15조
 - 제출서류: (필수)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준수신고서, 사전통고승인 증명서
(추가)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신분(소속) 확인 증명
 - 필리핀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생물탐사협정(상업적 목적), 무상허가증(비상업적) 등의 사본 제출 필요
※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6호 서식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준수신고



해외 유전자원 절차준수신고서 서식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	------	----------

신고인	① 성명(대표자)	② 소속(법인명)
	③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④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⑤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유전자원 제공자	⑥ 성명(대표자)	⑦ 소속(법인명)
	⑧ 국가명	⑨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⑩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사전통고 승인	발급 국가	발급 기관	승인번호	승인날짜
------------	-------	-------	------	------

유전자원 및 이용	⑪ 유전자원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학명 및 일반명) (/)		⑫수량 또는 농도([] 전통지식)
	⑬ 목적 [] 상업적 [] 비상업적	⑭ 용도 [] 의약용 [] 화장품용 [] 원예용 [] 기타()	
	⑮ 이익 공유 합의의 체결 여부 [] 합의 [] 미합의		⑯ 미체결 사유
	⑰ 이익 공유 합의의 내용(합의한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 금전적 이익 공유 [] 비금전적 이익 공유 [] 제3자 추후 이용에 관한 조건 []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조건 [] 이용자와 제공자 간 보고 또는 정보 공유 조건 []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준거법 및 대안적 분쟁 해결책(조정, 중재 등) [] 기타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관 국가점검기관의 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국가점검기관의 장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가점검 기관의 장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법인일 경우 ①란에는 대표자명을, ②란에는 법인명을, ③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⑤란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제공자가 법인일 경우 ⑥란에는 대표자명을, ⑦란에는 법인명을, ⑩란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⑪ 유전자원의 명칭란에는 특정 유전자원의 명칭이 있을 경우 그 명칭과 함께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을 적고, 특정 유전자원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만을 적습니다.
4. ⑫ 수량 또는 농도란에는 접근한 유전자원의 수량 또는 농도를 적고, 전통지식에 접근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 표를 합니다.
5. ⑬ 목적란, ⑭ 용도란은 복수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6. ⑯ 미체결 사유란에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익 공유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7. ⑰ 이익 공유 합의의 내용란에는 합의에 포함된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 표를 합니다. 이 경우 복수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부 록



필리핀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1.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은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이라고 칭한다.

제2조【정책의 선언】

우리나라의 야생생물자원과 그 서식지를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 것을 국가의 정책으로 한다. 이 정책의 실현에 있어서, 본 법에서는 이하를 목적으로 한다.

- (a) 생태학적 균형을 도모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확충하기 위해 야생 생물종과 그 서식지를 보전·보호하는 것
- (b) 야생생물의 수집 및 거래를 규제하는 것
- (c) 국익에 상응하는 주의를 기울이면서 국제조약에 대한 필리핀의 약속과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의 보호를 추구하는 것
- (d)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개시하거나 지원하는 것

제3조【적용 범위】

본 법의 규정은 국가통합보호지역제도-NIPAS 법이라 불리는 공화국법 제7586호에 따른 보호지역 및 중요 서식지 등 국내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는 모든 야생생물종에 적용된다. 이 법은 또한 거래 대상인 외래 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재배, 유지되거나 증식되거나 사육 하에 번식되는 외래 종에도 적용된다.

제4조【환경천연자원부 및 농업부의 관할】

환경천연자원부(DENR)는 모든 육생 동식물 종, 모든 바다 거북, 육상 거북, 담수산 거북, 악어 등의 습지 종, 물새, 모든 양서류 및 두공을 관할한다. 농업부(DA)는 중요 서식지로 선언된 모든 수생 서식지, 모든 어류 등의 수산 자원, 수생 식물, 무척추동물 및 두공을 제외한 모든 해양 포유류를 관할한다. 환경천연자원부 및 농업부의 장관은 각각의 관할 종의 목록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공동행정명령에 의해 해당 목록을 개정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팔라완 주에서는 공화국법 제7611호에 따라 여기에서 부여하는 관할권을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에 부여한다.

제2장 용어 정의

제5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a) 「생물탐사」란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의 연구, 수집 및 이용을 가리키며, 특히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상업용으로만 이용할 목적으로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을 연구, 수집,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b) 「부산물 또는 파생물」이란, 원시 또는 가공된 형태로 야생생물에서 취한 모든 부분, 또는 야생생물에서 추출된 물질을 말한다. 여기에는 박제, 식물 표본이 포함된다.
- (c) 「사육하에서의 번식, 재배 또는 증식」이란, 관리 조건하에서 또는 인간의 개입에 의해 개체를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 (d) 「수집」이란, 야생생물 및 그 부산물 또는 파생물을 모으거나 수확하는 행위를 말한다.
- (e) 「보전」이란, 야생생물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또는 서식지의 유지, 복원 및 증강을 말한다.
- (f) 「심각한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A류)」이란, 매우 가까운 장래에 야생에서의 멸종 위험성이 매우 높은 종을 말한다.
- (g) 「경제적으로 중요한 종」이란, 거래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의 가치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갖는 종을 의미한다.
- (h)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B류)」이란, 심각한 멸종위기종(종멸위기 I A류) 만큼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태를 가져온 요인이 계속 작용하면 야생에서의 존속이 곤란한 종을 말한다.
- (i) 「고유종」이란 국내의 특정 지역에서만 자생하여 발견되는 종을 말한다.
- (j) 「외래종」이란 국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종을 말한다.
- (k) 「반출허가서」란 개인에게 야생생물을 필리핀에서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것을 인정하는 허가서를 말한다.
- (l) 「무상허가서」란, 야생생물을 수집하는 비상업적 과학활동 또는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허가를 말한다.
- (m) 「서식지」란, 종 또는 아종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자연적으로 개체군을 형성한 장소 또는 환경을 말한다.
- (n) 「수입허가서」란, 다른 나라로부터 야생생물을 반입하는 것을 개인에게 인정하는 허가서를 말한다.
- (o) 「재래의 야생생물」이란, 국내에 자생하는 야생생물의 종 또는 아종, 또는 개체군이 국내에 정착한 종 또는 아종을 말한다.

- (p) 「반입」이란, 자연의 서식지가 아닌 야생 환경에 종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 (q) 「재수출허가서」란 과거에 수입된 야생동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개인에게 인정하는 허가서를 말한다.
- (r) 「장관」이란 환경천연자원부의 장관, 농업부의 장관의 어느 하나 또는 양쪽을 말한다.
- (s) 「멸종우려종」이란, 심각한 멸종위기종(멸종위기Ⅰ A류), 멸종위기종(멸종위기Ⅰ B류), 위기종(멸종위기Ⅱ류) 및 개체군이 멸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야생생물 종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 (t) 「거래」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야생생물과 그 파생물 또는 부산물의 교환, 수출입, 매매에 종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u) 「전통적 이용」이란, 토착민이 성문 또는 불문의 규칙, 용법, 관습, 전통적으로 준수해오고 받아들이며 인식해 온 관행에 따라 야생생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v) 「수송허가서」란, 개인에게 필리핀의 영유지배권 내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것을 인정하는 허가서를 말한다.
- (w) 「취약종(멸종위기Ⅱ류)」이란, 심각한 멸종위기종(멸종위기Ⅰ A류), 멸종위기종(멸종위기Ⅰ B류)만큼은 아니지만, 그 서식지역 전체에 걸쳐 유해한 요인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종을 말한다.
- (x) 「야생생물」은 모든 발달 단계에서의 동식물의 야생형 및 품종으로서 포획되거나 사육 또는 번식된 것을 포함한다.
- (y) 「야생생물 수집허가서」란, 야생 환경으로부터 특정 종의 야생생물을 상업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수집하기 위한 허가서를 말한다.
- (z) 「야생생물 사육·재배 허가서」란, 보전, 거래, 또는 과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야생생물의 육종·사육장을 설치, 운영, 및 유지하는 허가서를 말한다.

제3장 야생생물 자원의 보전과 보호

제1절 총칙

제6조【야생 생물 정보】

이 장에 언급된 모든 활동은 이용 가능한 최상의 정보의 적절한 평가에 근거하거나, 관련 종 또는 아종의 존속 또는 그 서식지에 대하여, 실제로 또는 목적상, 그 활동이 유해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과학 데이터의 평가에 근거하여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다. 장관은 이 목적을 위해 연구를 통해 야생동물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제7조【야생 생물의 수집】

야생동물의 수집은 본법 제6조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을 수집할 때에는 현존하는 야생생물 개체군과 그 서식지에 대한 유해한 영향이 최소한 전혀 없는 적절하고 허용 가능한 야생 생물 수집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 덧붙여 원주민에 의한 야생 생물의 수집에 대해서는, 주로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이용을 위해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수집과 이용은 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류의 수집에 대해서는 본 법 제23조에 준거한다.

제8조【야생생물의 소유】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야생동물을 유지하는 재정적 및 기술적 능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야생동물의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경우 그 야생 생물(source)이 본 법을 위반하여 취득된 것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9조【부산물 및 파생물의 수집 또는 소유】

부산물 및 파생물은 수집되거나 소유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 그 유래원이 되는 야생생물이 본법을 위반하여 취득된 것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0조【야생생물, 부산물 및 파생물의 국내 수송】

수집된 야생생물, 부산물 및 파생물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소유된 야생생물, 부산물 및 파생물의 국내 수송은 야생생물과 공중 보건에 유해하지 않은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다.

제11조【야생동물의 수출입】

야생동물종의 다른 나라로의 수출 또는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본 법의 규정 및 그에 따라 발행된 제 규칙을 엄중히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장관 또는 임명된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 당해 야생동물의 수령자는 기술적 및 재정적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12조【고유종 또는 재래의 야생생물의 반입, 재반입 또는 방류】

고유종 또는 재래의 야생생물의 반입, 재반입 또는 방류는 본 법 제6조에 따라 장관 또는 정식 대표자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개체수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반입 방법에 대해서도, 생물의 생태에 초점을 맞춘 과학적 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요한다. 반입 신청자는 또한 관련 개인 또는 조직과의 공개 협의를 실시한다.

제13조【외래 야생생물의 반입】

장관 또는 정식 대표자로부터의 허가를 사전에 취득하지 않는 한, 어떠한 외래종도 국내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공화국법 제7586호의 대상이 되는 보호지역 및 본 법 제25조에 따른 중요 서식지에는 외래종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반입이 허가되는 경우에는 생물의 생태 및 종이 반입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측면과 거기에 관련된 측면에 초점을 맞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반입신청자는 지역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전의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확실히 취득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제14조【바이오프로스펙팅】

바이오프로스펙팅은 신청자가 장관이 부과하는 생물다양성의 보호에 필요한 합리적 조건을 지키는 것을 명시한 약정을 체결하는 대로 허가된다.

장관 또는 정식 대표자는 필요한 허가를 주기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청자에 대하여 관계하는 원주민문화사회, 지역사회, 공화국법 제7586호에 따른 관리위원회, 사인, 또는 민간조직으로부터 사전통고승인을 취득할 것을 의무화한다. 신청자는 해당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바이오프로스펙팅의 취지와 대상범위를 완전히 공개한다. 원주민으로부터의 사전통고승인은 현행법에 따라 취득한다. 관계기관은 바이오프로스펙팅의 기획서를 적당한 기간 내에 처리한다. 필요한 서류가 완전히 제출되는 대로, 장관은 연구 기획에 대한 적절한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린다. 신청자가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인 경우, 필리핀의 조직은 적극적으로 연구 및 수집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고, 적당하다면 필요에 따라서, 생물자원 및 유전 자원에 유래하는 제품의 기술 개발에도 참가 한다.

제15조【야생생물에 관한 과학적 연구】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물자원의 수집과 이용은 약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대로 장관 또는 정식 대표자에 의한 무상허가서의 발행에 의해 허가된다. 다만, 무상허가서의 발행 전에 미리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14조의 마지막 항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6조【바이오세이프티】

필리핀에서 수행되는 유전 공학 및 병원체를 다루는 모든 활동과 인간과 환경에 해로울 수 있는 생물의 수입, 이입, 야외 개방 및 생물의 번식이 필요한 활동은 공공 복지 및 야생 생물과 그 서식지의 보전보호를 확보하는 바이오세이프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를 받는다.

제17조【야생생물 자원의 상업용 번식 또는 증식】

상업을 목적으로 한 야생생물의 번식 또는 증식은 제6조에 따라 장관 또는 정식 대표자에 의해 야생생물 사육·재배 허가서의 발행으로 허가된다. 다만,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육한 야생생물의 자손과 번식력이 없는 부모만으로 한다. 또한 야생생물의 상업용 번식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우에는 항상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제18조【경제적으로 중요한 종】

장관은 이 법 발효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종의 목록을 작성한다. 장관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기 종의 개체수 평가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갱신한다.

이러한 종의 수집은 평가 결과에 의해 특정 수의 수집이 수행 되더라도 해당 종의 개체 수가 여전히 생존 가능하고 그 수를 회복할 수 있음을 나타낼 때만 허용된다.

이를 위해 장관은 수집을 허가할 수 있는 종의 내용과 양을 정한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종에 멸종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항상 본법의 규정에 따라 과학, 교육 또는 번식 또는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형태의 수집도 금지한다.

제19조【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의 지정】

멸종의 우려가 있는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협정의 실시에 대해서는 환경천연자원부의 보호지역·야생생물국(PAWB)을 육생자원의 관리당국으로 하여 농업성의 수산자원국(BFAR)을 수산자원의 관리당국으로 한다. 다만, 팔라완주에 있어서는 공화국법 제7611호에 따라 이 실시권을 지속 가능한 개발 팔라완 위원회에 부여한다. 관리 당국에 조연하기 위해 육생 종, 수생 종 및 해양 종을 다루는 과학 당국을 지정한다. 육생종에 대해서는 환경천연자원부의 생태계 연구개발국(ERDB), 필리핀 생물과학연구소, 국립박물관, 그 외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과학당국으로 한다. 해양종 및 수생종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국, 국립해양과학연구소, 필리핀대학 비사야교, 실리만대학, 국립박물관, 그 외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과학당국으로 한다. 덧붙여 과학 당국의 의장역은, 육생종에 대해서는 생태계 연구개발국이, 해양종 및 수생종에 대해서는 국립 해양 과학연구소가 맡는 것으로 한다.

제20조【허가서를 발행하는 장관의 권한】

장관 또는 정식 대표자는 본 법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에는 허가서, 증명서 또는 허가를 다음의 유효기간으로 발행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1) 야생생물 사육·재배 허가서 3~5년

- (2) 야생생물 수집 허가서 1~3년
- (3) 무상허가서 1년
- (4) 국내 수송 허가서 1~3개월
- (5) 수출허가서, 수입허가서, 재수출허가서 1~6개월

이러한 허가는 적절한 기관이 발행한 지침에 따라 가입자와의 협의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

제21조【수수료 및 요금】

허가의 발행에 대하여 일정액의 타당한 수수료와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금액은 대신이 관계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야생생물종의 수출에 대해서는 수송 비용을 제외한 수출액의 3% 미만의 수출허가료를 징수한다. 다만, 이 요금결정에 있어서는 생산비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 농장에서 생산된 절화, 잎 등에 대해서는 이 수출허가료를 면제한다. 또한 장관은 수수료 및 요금을 관계부문과 협의하여 2년마다 재검토하거나 필요에 따라 재검토하고 그에 따라 개정한다.

제2절 멸종의 일종의 보호

제22조【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류의 결정】

장관은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종 또는 아종을 결정하고, 최선의 과학 데이터에 근거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에 상당한 주의를 지불하면서, 그것을 근절멸종, 멸종 위기 종, 위급종 및 기타 허용되는 종류로 분류한다. 이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그 서식지 또는 서식지의 파괴, 변경 또는 축소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것
- (b) 상업, 레크리에이션, 과학 또는 교육을 위한 과도한 사용
- (c) 현행 규제 제도의 부적절함
- (d) 야생생물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자연 요인 또는 인위적 요인

장관은 본 법 발효로부터 1년 이내에 멸종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의 분류 리스트를 검토, 개정, 발표한다. 그런 다음이 목록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한다. 다만, 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으로서 리스트에 기재한 종은, 최초의 기재로부터 3년간은 리스트로부터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상당한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목록에 종을 추가하거나 목록에서 종을 제거하라는 요청이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장관은 신속하게 이 조의 첫 항에 설명된 관련 요인에 따라 종의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해당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장관은 또한 리스트에 기재된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과 외관의 닮은 야생생물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해당 종도 마찬가지로 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으로 분류한다.

제23조【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생물, 부산물 및 파생물의 수집】

본 법에 따라 결정되고 목록에 기재된 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의 수집은 그 부산물과 파생물을 포함하여 과학, 번식 또는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본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된다. 보전을 위한 번식 또는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집은 인증을 받은 개인,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과학기관에만 허가된다.

제24조【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을 보전하기 위한 번식 혹은 증식】

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을 보전하기 위한 번식 또는 증식에 대해서는, 그 자연의 서식지에 있어서의 개체수를 늘리도록 장려한다. 이것은 사육하여 번식하거나 증식 한 종을 방출, 재이입 또는 방류 할 수 있는 서식지의 회복 또는 보호와 동시에 수행된다.

멸종의 우려가 있는 상업용 번식 또는 증식의 경우, 신청자가 다음의 최소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즉,

- (a) 종의 번식 방법 및 사육 관리 기법의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는 것
- (b) 본 법 제17조에 따라 상업용 번식을 하는 것과 동시에 보전을 위한 번식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장관은 멸종될 수 있는 일종의 상업용 번식 리스트를 작성하고,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개정하거나 갱신한다.

제25조【중요 서식지의 설치】

장관은 본 법 발효로부터 2년 이내에 공화국법 제7586호에 근거한 보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중요 서식지로 지정한다. 이 지정은 종의 고유성 또는 풍부함, 특히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위적 압력 또는 위협의 존재를 고려하면서 최상의 과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지정된 모든 중요한 서식지는 지방정부 부문 및 기타 관련 단체의 협력을 얻어 거기에 의존하는 멸종의 우려가 있는 일종의 존속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개발이나 파괴로부터도 보호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장관은 토지사용권의 취득, 지역권의 설정 그 외, 중요 서식지의 보호에 적합한 약정의 체결을 비롯하여 토지 또는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구입, 기부 또는 수용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제3절 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 및 외래종의 등록

제26조【사인이 소유하는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및 외래 야생생물의 등록】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그 야생동물을 유지하는 재정적 및 기술적 능력과 시설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야생동물의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은 본 법 발효로부터 12개월 후에 소정의 기간을 정하고, 개인 또는 조직은 본 법 발효 전에 수집한 모든 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 및 수입한 외래종을 그 기간 내에 등록하는 것 한다. 다만, 그 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이 번식, 증식, 또는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는 서로 받아들여지는 약정을 통해 그 야생생물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소정의 기간이 지난 후에 등록증을 받지 않고 멸종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법에 정하는 형벌을 부과하여 그 야생동물을 정부에 몰수한다.

필리핀의 야생생물 중에서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멸종의 위험이 있는 특정 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경우에도 나중에 설명된 모든 것에 대해 멸종의 위험이 있다. 갱신 리스트에 발표되고 나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한다.

제4장 불법 행위

제27조【불법행위】

본법에 근거한 별도의 허가가 없는 한 야생생물자원과 그 서식지를 의도적이고 고의로 개발하거나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떠한 자에게도 불법으로 한다.

- (a)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야생 생물종을 죽이고 처분한다.
 - (i) 이미 정착한 부족 또는 원주민 문화 사회의 종교 의식의 일환으로 할 때
 - (ii) 야생 생물이 불치의 전염병에 걸려있을 때
 - (iii) 그 야생 생물의 고통에 종지부를 칠 필요가 있다고 간주될 때
 - (iv) 인간의 생명 또는 사지에의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할 때
 - (v) 승인을 받은 연구 또는 실험에 이용한 후, 그 야생생물을 죽이거나 처분할 경우
- (b) 야생 생물 종의 생식 기관을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키는 손상을 가하는 것
- (c) 중요 서식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한다.
 - (i) 야생 생물에게 유해한 폐기물 투기
 - (ii) 불법으로 거주하는 등 중요한 서식지의 일부 점유
 - (iii) 광물의 탐색 또는 채굴

- (iv) 화재
- (v) 벌채
- (vi) 채석
- (d) 야생생물 자원의 이입, 재이입 또는 방류
- (e) 야생생물 거래
- (f) 야생생물, 그 부산물 및 파생물의 수집, 사냥 또는 소유
- (g) 동지, 동지가 있는 나무, 숙주 식물 등의 수집 또는 파괴
- (h) 학대 또는 전향의 대상이 되지 않은 손상을 주는 것
- (i) 야생생물의 수송

제5장 벌금 및 형벌

제28조【본법의 위반에 대한 형벌】

본 법에 따라 분류되는 종에 대하여 전 조(a)항에 기재한 불법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다음의 형벌과 벌금의 어느 하나 또는 양쪽을 부과한다.

- (a) 심각한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A류)에 대해서는 6년 초과 12년 이하의 징역, 벌금 10만~100만페소
- (b)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B류)에 대해서는 4년 초과 6년 이하의 징역, 벌금 5만~50만페소
- (c) 위급종(멸종위기 II 류)에 대해서는 2년 초과 4년 이하의 징역, 벌금 3만~30만페소
- (d) 그 외의 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에 대해서는 1년 초과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2만~20만 페소
- (e) 그 외의 야생 생물종에 대해서는 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1만~10만 페소

전 조(b)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다음의 형벌과 벌금의 어느 하나 또는 양쪽을 부과한다.

- (a) 심각한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A류)으로 분류된 종에 대해서는 4년 초과 6년 이하의 징역, 벌금 5만~50만페소
- (b)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B류)에 대해서는 2년 초과 4년 이하의 징역, 벌금 3만~20만페소
- (c) 위급종(멸종위기 II 류)에 대해서는 1년 초과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2만~20만페소
- (d) 기타 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에 대해서는 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1만~5만페소
- (e) 그 외의 야생 생물종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 벌금 5,000~2만 페소

전조(c) 및 (d)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8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5,000~500만 페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부과한다. 전 조(e)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다음의 형벌과 벌금의 어느 하나 또

는 양쪽을 부과한다.

- (a) 심각한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A류)으로 분류된 종에 대해서는 2년 초과 4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0~30만 페소
- (b)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B류)에 대해서는 1년 초과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2,000~20만 페소
- (c) 위급종(멸종위기 II 류)에 대해서는 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1,000~10만 페소
- (d) 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종에 대해서는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의 징역, 벌금 500~5만 페소
- (e) 그 외의 야생생물종에 대해서는 10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징역, 벌금 200~2만 페소

전 조(f) 및 (g)항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다음의 형벌과 벌금의 어느 하나 또는 양쪽을 부과한다.

- (a) 심각한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A류)으로 분류된 종에 대해서는 2년 초과 4년 이하의 징역, 벌금 3만~30만페소
- (b)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B류)에 대해서는 1년 초과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2만~20만페소
- (c) 위급종(멸종위기 II 류)에 대해서는 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1만~10만페소
- (d) 기타 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에 대해서는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의 징역, 벌금 5,000~5만 페소
- (e) 기타 야생생물종에 대해서는 10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징역, 벌금 1,000~5,000페소. 다만, 전 조(f)항의 불법행위가 부적절한 기술과 장치를 사용하여 영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 법에 정하는 최고의 형벌에 처한다.

전 조(h) 및 (i)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다음의 형벌과 벌금의 어느 하나 또는 양쪽을 부과한다.

- (a) 심각한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A류)으로 분류된 종에 대해서는 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5만~10만페소
- (b) 멸종위기종(멸종위기 I B류)에 대해서는 3개월과 초과 6개월 이하의 징역, 벌금 2만~5만페소
- (c) 위급종(멸종위기 II 류)에 대해서는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의 징역, 벌금 5,000~2만 페소
- (d) 기타 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으로 분류된 종에 대하여는 10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징역, 벌금 1,000~5,000페소
- (e) 기타 야생생물종에 대하여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징역, 벌금 200~1,000페소

모든 야생생물, 그 파생물 또는 부산물 및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 된 모든 장비, 도구 및 운송 수단은 사실상 정부에 몰수한다. 다만, 상기 수송수단의 소유권이 당해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제

3자 또는 해당 불법행위를 모르는 제3자에 있는 때에는 해당 수송수단을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위반자를 체포한 기관은, 압수 또는 회수한 모든 야생생물을 그 지역의 가장 가까운 야생생물 구호 센터(부처 소관)에 즉시 수송시킨다.

위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복역하여 벌금을 지불한 후에는 그 이상의 수속을 하지 않고 국외로 추방한다. 이 법에 정한 벌금은 인플레이션을 채우고 이 벌금의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적어도 10% 늘린다.

제6장 기타규정

제29조【야생 생물 관리 기금】

이 법으로 국고특별계정으로서 성이 관리하는 야생생물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 법에 대한 위반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은 서식지의 회복 또는 복원의 비용을 이 기금으로 충당한다. 또한 이 기금은 과학적 연구, 시행 및 모니터링 및 관련 기관의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이 기금의 원자는 부과한 벌금, 지급된 손해배상금, 수수료, 요금, 기부, 기증, 사무수수료, 또는 기여금 등의 형태의 조성으로부터 얻는다. 이 기금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면세로 하는 것 외에 정부가 부과하는 그 외 모든 세금이나 요금을 면제한다.

제30조【야생동물 집행관 대리의 임명】

장관은 NGO, 시민단체, 지역사회조직 그 외, 야생동물 집행관 대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 중에서, 야생동물 집행관 대리를 임명한다. 필리핀 국가 경찰(PNP), 필리핀 국군(AFP), 국가 수사국(NBI) 및 기타 법률 집행 기관은 야생동물 집행관을 임명한다. 따라서 야생동물집행관은 체포 및 구류에 관한 현행법규칙에 따라 불법으로 거래된 야생동물을 몰수하고 본 법의 위반자를 체포할 완전한 권한을 가진다.

제31조【국립 야생생물 연구 센터의 설립】

장관은 사육하에서의 번식 또는 증식을 비롯하여 야생동물의 적절한 보전보호전략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주도하기 위해 육생종 및 수생종에 관한 국립야생동물연구센터를 몇 개 설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관은 학술기관, 연구기관 및 야생동물 관련 업계로부터 전문가의 참여를 장려한다.

제32조【야생 생물 구호 센터】

장관은 압수, 포기 또는 기증된 야생동물의 모든 복지와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야생동물을 일시적으

로 보관하고 돌보는 야생동물구호센터를 몇 개 설립하거나 지정한다. 장관은 이 구호센터의 야생동물의 처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한다.

제33조【야생동물 이동 감시 부문의 설치】

장관은 관련 국제협정을 비롯하여 야생동물에 관한 모든 현행법규칙의 철저한 준수와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전략적 공항과 항만에 야생동물이동감시부문을 창설한다. 공항 또는 항만에 배속된 세관직원 기타 정부의 정식 대표로서 그 공무수행시에 야생생물품을 압수한 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야생동물이동 감시 부서의 허가를 얻는다.

제34조【면세】

야생생물 자원과 그 서식지의 보전 보호를 위한 기부, 기여, 기증, 조성 또는 재정 원조이며, 환경 천연 자원성 또는 농업성에 대해 행해진 것, 및 양성 및 지방정부 부문의 승인을 받고 증권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NGO에서 야생동물보전에 종사하는 것에 대하여 행해진 것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부금을 면세로 한다.

제35조【대표종】

지방정부부문은 관할지역 내 고유종에 대한 보전조치에 착수한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부문은 세부식초(copsychus cebuensis), 민드로 물소(bubalus mindorensis), 필리핀 안경 원숭이(tarsius syrichta), 필리핀 티크(tectona philippinensis) 등 그 지방정부의 보전을 상징하는 대표종을 선정할 수 있다.

제36조【식물원, 동물원 및 그와 유사한 시설】

장관은 레크리에이션, 교육 및 보전을 위한 식물원, 동물원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유지를 규제한다.

제37조【시행 규칙】

본 법 발효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경 천연 자원성 및 농업성의 장관은, 상원의 환경 위원회 및 하원의 에코로지 위원회와 협력해, 본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 규칙을 각각 교부한다. 양성은 적절한 경우에는 항상 분리할 수 없는 공동의 문제에 관한 여러 규칙의 책정과 시행면에서 협력한다. 본법을 시행할 때에는 국제적인 협정 및 의정서에 대한 일본의 약속을 고려한다.

제38조【세출 예산】

본 법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금액은 현행의 일반세출예산법의 환경천연자원부 세출예산액에 편입한다.
즉, 본 법의 규정의 전면적 시행에 필요한 금액은 매년 일반세출예산법에 포함된다.

제39조【분리조항】

장래에 있어서 본 법의 어느 하나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선고된 경우라도, 그 밖의 규정의 유효성 또는 합법성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40조【폐지 조항】

법률 제2590호, 제3983호, 연방법 제63호 개정법, 대통령 명령 제1219호 개정령, 공화국법 제6147호 그 외의 법률, 명령 및 규칙에서 본 법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은 하여 폐지하거나 본 법에 따라 수정한다.

제41조【효력】

이 법은 관보에 공표된 지 15일 후에 효력을 발한다.

2. 생물탐사활동지침

국가통합보호지역제도법(공화국법 제7586호), 지방자치법(공화국법 제7160호), 팔라완주 전략적 환경 계획법(공화국법 제7611호), 어업법(공화국법 제8550호), 종자산업진흥법(공화국법 제7308호), 전통적 및 대체적 의약품법(공화국법 제8423호), 기타 관계 법령과 관련하여, 생물다양성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 그리고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공화국법 제9147호) 제14조와 원주민권리법(공화국법 제8371호) 제35조에 따라 수정된 대통령령 제247호(1995년)의 규정에 따른 필리핀의 책무에 근거하여 생물탐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여기에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정책

- 1.1 국가는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자원의 보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생물자원의 탐사를 규제한다.
- 1.2 국가는 모든 생물자원의 탐사활동을 허용하기 전에 사전통고승인(PIC)이 자원제공자로부터 취득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국가는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인한 이익이 자원제공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보장한다.
- 1.3 국가는 생물자원의 최적 이용을 목표로 국내 생명공학 역량개발을 촉진한다.

제2조 적용범위

- 2.1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기관을 포함한 모든 자원이용자가 실시하는 생물자원 탐사활동에 적용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야생생물, 미생물, 사육 종, 번식 종, 외래종 등 필리핀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자원의 생물 탐사에 적용되며,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필리핀에서 조달된 모든 생물자원의 서식 지역 외부 컬렉션에 적용된다. 다만, 필리핀이 체약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협정에 근거하여 현재 이용되고 있는 컬렉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통합보호지역제도법(NIPAS)에 근거하는 보호지역, 사유지 및 원주민권리법(IPRA)에 의한 소상전래영역 및 영토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는 생물탐사에 적용된다.
- 2.2 워싱턴 조약 및 IUCN 적색목록(red list)에 기재된 종에 관한 생물자원 탐사활동이 법률에 의해 허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보호에 관한 개별규칙에 더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제3조 적용제외

- 3.1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전통적인 이용
- b. 생존을 위한 소비
- c. 목재 벌채나 어업 등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상업 소비
- d.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야생생물에 관한 과학연구
- e. 농업생물다양성에 관한 과학 연구
- f.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 제17조 및 24조에 따른 상업용 번식이나 증식, 또는 보전을 위한 번식, 또는 증식만을 목적으로 하는 야생생물종의 수집 및 수송에 관한 현행 절차
- g. 필리핀이 당사국인 국제협정에 근거하여 현재 이용되고 있는 서식지의 콜렉션

다만, 적용제외 활동에 대하여 발행하는 모든 허가, 라이선스 또는 협정에는, 수집한 생물자원을 그 후 생물탐사에 이용하는 경우 수집자가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3.2 연구자가 분류학 또는 생물자원의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학적 특성 평가만을 위해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영리의 목적 없이 순수하게 학술적인 목적으로 과학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야생생물법 제15조를 적용한다. 다만,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해당 생물자원을 이전하고 연구성과를 이용한다면 이는 생물탐사로 간주하여 이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3 전통약 또는 대체약으로서 이용하기 위한 약용 식물의 개발의 경우, 주로 전통적 및 대체적 의약품법을 적용한다.

제4조 목적

- 4.1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절차를 정비하고 합법적인 자원이용자의 동 절차 준수를 촉진하는 것
- 4.2 자원제공자로부터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할 때의 지침 및 생물탐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해당 자원제공자와 협상할 때의 지침을 정한다.
- 4.3 사전통고승인(PIC), 수집할당,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제3자에 대한 물질이전 및 생물탐사협정(Bioprospecting Undertaking: BU)의 기타 규정의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가성비가 뛰어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제5조 용어

「BFAR」이란, 농업부(DA)의 집행기관 중 하나인 어업수산자원국을 말한다.

「생물자원」은 인류에게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갖는 유전자원, 생물이나 그 일부, 개체군 및 기타 생태계의 생물학적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물탐사」란,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의 연구, 수집 및 이용이며, 이에 의해 얻어진 지식을 상업에만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생물탐사협정」 또는 「BU」란, 「야생생물법」 제14조에 따른 ‘약정’ 또는 ‘허가’로서, 생물탐사를 하려는 자원이용자에게 협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는 것이다.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물체 또는 방법을 특정 용도로 생성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생물 시스템, 생물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응용 기술을 의미한다.

「워싱턴 조약」이란,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을 가리키고, 그 부속서에 기재하는 동식물종의 국제간 거래를 규제하는 조약이다.

「수집지」는 생물탐사를 목적으로 생물자원을 수집하는 근접 또는 인접한 500 헥타르 이하의 토지 또는 수역을 말한다.

「전통적인 상업 소비」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생물자원의 이용으로서 어업이나 목재 벌채와 같이 직접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의한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방법은 포함하지 않는다.

「DA」란 농업부를 말한다.

「DENR」이란 환경천연자원부를 말한다.

「원산국의 공개」란, 자원이용자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출원 및 제품 개발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신청에 있어서, 생물탐사협정(BU)으로부터 명백한 해당 제품의 개발에 사용했던 생물자원의 원산국을 명기하도록 정하는 BU의 규정을 말한다.

「최종평가」란 이 가이드라인의 요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되는지, 즉 PIC 프로세스가 성실하게 준수되고 합의된 이익이 공정하고 공평한지 아닌지를 단독, 또는 부처 합동의 「기술위원회」가 판정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자유 의사에 따른 사전통고승인(FPIC)」이란, 각 원주민 문화 공동체, 또는 원주민(ICC/IPs)의 관습법 및 관행에 따라,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조작, 간섭, 및 강제도 받지 않고, 대상이 되는 계획, 프로젝트 또는 활동의 의도와 범위를 해당 공동체의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완전하게 개시한 후에 얻은 해당 공동체 전체 구성원의 총의를 말한다.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말한다.

「유전자원」이란,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을 말한다.

「IACBGR」이란, 생물·유전자원부처간위원회를 말하며 대통령령 제247호의 실효성 확보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이다.

「원주민 지식체계(IKS) 및 전통지식(TK)」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가진 원주민 사회 및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관행을 말한다.

「원주민」(IPs) 및 「원주민문화공동체(ICC)」란, 자신 및 타인의 귀속의식에 의해 특정된 집단, 또는 동

질사회이며, 공통의 경계를 가지는 확정된 영역에, 조직되어 공동체로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예부터 소유권을 주장하여 습관, 전통 그 외의 문화적 습성을 점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 또는 식민주의, 토착의 종교 이외의 종교 및 문화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진입에 대한 저항에 의해 역사적으로 대다수의 필리핀 국민과 구별되게 된 것을 말한다. 또 ICCs/IPs에는, 자신의 전통적인 영역으로부터 이동된 것으로 생각되는 민족, 또는 조상전래영역으로부터 이주한 것으로 생각되는 민족으로서, 사회, 경제, 문화, 정치면에서 독자적인 체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도 보유하고 있으며, 정복 또는 식민지화된 시대, 또는 토착의 종교 이외의 종교가 침입해 온 시대, 또는 현재의 국경이 확정된 시대에 이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한 집단의 가계라는 이유로 원주민으로 간주되는 민족도 마찬가지로 포함된다.

「초기 평가」란, 연구제안서에 기재한 생물자원의 수집 신청이 생물탐사에 해당해,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하는 순서를 밟을 필요가 있는지 어떤지를 적절한 실시 기관이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IPRA」란 1997년 원주민권리법(공화국법 제8371호)을 말한다.

「IUCN」이란 국제자연보전연맹을 말한다.

「지역사회」란, 수집지 내 또는 수집지의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사전통고승인(PIC) 및 이익공유 협상의 목적상,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는 바랑가이 회의(Barangay Assembly)가 대표하고, PIC 및 이익공유에 관한 동 회의의 결정은 적절한 바랑가이 회의 결의로 이루어지며 PIC 인증서에 서명한다.

「NCIP」는 국가원주민위원회를 말한다.

「NIPAS」란 국가통합보호지역제도(National Integrated Protected Area System) 또는 이 제도를 설치한 공화국법 제7586호를 말한다.

「영리 없음」이라는 용어가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제외가 되는 생물자원의 연구자 또는 수집자의 설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 또는 수집자가 생물자원을 이용한 상품개발 또는 생물자원에서 유래하는 상품개발에 참가한 이력, 또는 생물자원을 이용한 발명 또는 생물자원에서 유래하는 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출원의 이력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 해당 연구자 또는 수집자는 생물학적 탐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국내 또는 외국의 협력자, 파트너, 자금 지원자 또는 투자자를 가져서는 안 된다.

「외국의 협력자 또는 투자자를 갖지 않는다」라는 용어가 필리핀인 자원 이용자에 관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물탐사에 관여하는 외국의 협력자, 파트너, 자금 지원자 또는 투자자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지원 또는 참여도 얻지 못함을 의미한다.

「PAMB」는 국가통합보호지역제도(NIPAS)법 및 보호지역을 설치하는 특별법에 따라 보호지역별로 창설된 보호지역관리위원회(Protected Area Management Board)를 말한다.

「PAWB」란, 국가통합보호지역제도(NIPAS)법 및 보호지역을 설치하는 특별법에 따라 보호지역별로 창설된 보호지역관리위원회(Protected Area Management Board)를 말한다.

「PCSD」는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Palawan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말한다. 「PITAHC」란, 1997년 전통적 및 대체적 의약품법(TAMA)(공화국법 제8423호)에 근거해 창설된 필리핀 전통 의료·대체 의료 연구소(Philippine Institute for Traditional and Alternative Health Care)를 말한다.

「사전통고승인(PIC)」이란, 관련된 지역사회, 보호지역관리위원회(PAMB), 또는 사유지의 지주로부터 신청자가 취득하는 동의로서, 야생생물의 수집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생물탐사 활동의 의도와 대상 범위를 해당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완전하게 개시한 후에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제공자」란 생물자원을 수집한 장소의 지역사회, 원주민, 보호지역관리위원회(PAMB), 사유지의 지주를 말한다.

「자원이용자」란 적절한 기관과 체결한 생물탐사협정에 근거하여 필리핀 국내의 정해진 지역에서 생물탐사를 목적으로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자로서 공인이든 사인이든 불문하고 국내 또는 국외의 개인, 회사, 단체,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과학연구」란 「야생생물법」 제15조 및 동법 이행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기초과학지식의 취득을 위해 생물자원의 체계적 수집, 연구, 잠재적 용도의 발견을 의미한다.

「장관」이란, 농업부, 또는 환경천연자원부의 장관을 말한다.

「생존을 위한 소비」란, 가정에서 소비하기 위한 생물자원의 수집 및 이용을 말한다.

「지속 가능한 이용」은 생물 다양성의 장기적인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 및 속도로 생물 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현재 및 미래 세대의 필요성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물의 다양성의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위원회」란, 실시 기관에 의해 적절히 단독, 또는 합동으로 소집되는 전문가 그룹을 말하며, 이 가이드라인 제6조에 정하는 생물탐사협정 초안의 최종평가 및 서명자에 대한 지지 표명을 주된 책무로 한다. 기술위원회에는 국가원주민위원회(NCIP),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 필리핀 전통의료·대체의료연구소(PITAHC)의 대표를 포함한다.

「전통적인 이용」이란, 원주민이 전통적으로 지켜, 받아들이고, 인식해 온 규칙, 용법, 습관, 관행에 따라서 실시하는 야생생물의 이용을 말한다.

제2장 제도

제6조 생물탐사협정(BU)의 서명자

6.1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생물탐사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생물탐사협정(BU)”이라

부르는 협정을 자원이용자가 농업부 장관이나 환경천연자원부 장관과 체결할 때 허용된다. 장관의 권한은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의 농업부 및 환경천연자원부의 개별 관할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생물탐사활동이 팔라완주에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의 의장이 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동 협정에 공동 서명한다.

6.2 장관 또는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 의장 또는 양자는 이 가이드라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특히 사전통고승인(PIC)을 확실하게 취득하고 관련 자원제공자와 이익공유 협상의 확실한 이행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평가를 지원하는 기술위원회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소집한다. 해당 생물탐사활동이 조상전래영역에 관련되는 경우나 팔라완주에서 행해질 경우, 또는 약용 표본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항상 국가주민위원회(NCIP),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 또는 필리핀 전통의료·대체의료연구소(PITAHC)의 대표가 필요에 따라 기술위원회에 참가한다.

6.3 장관은 수집할당, 기술이전, 역량강화 등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협상에 있어서 권한 있는 국내 당국으로부터의 조언을 받기 위해 동 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6.4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에 근거하여 생물탐사협정의 체결권한이 장관에게 위임되는 것을 감안하여 대통령령 제247호에 의해 창설된 생물·유전자원부처간위원회(IACBGR)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6.5 생물탐사 활동이 농업부 및 환경천연자원부 쌍방의 관할 하에 들어가는 종에 관련되는 경우는 항상, 신청의 심사는 양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체결하는 생물탐사협정(BU)은 하나로 하고, 자원제공자와 협상한 여러 조건을 모두 이 협정에 정리하여 농업부 및 환경천연자원부의 장관이 서명한다.

제7조 이행기관

7.1 보호지역 야생생물국(PAWB), 어업수산자원국(BFAR), 그 외 농업성 관계 규제기관 및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는, 필요에 따라 생물탐사 신청의 초기평가를 이행한다. 생물탐사협정(BU) 초안의 최종평가는 각 부처의 기술위원회가 이행하고, 그 후에 장관에게 지지를 표명한다. 초기 평가 및 최종 평가는 장관이 발행하는 지침에 따라 각 지역 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다.

7.2 보호지역 야생생물국(PAWB), 어업수산자원국(BFAR) 그 외 농업성의 관계 규제기관 및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는, 장래에 예상되는 자원이용자가 이 가이드라인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7.3 보호지역 야생생물국(PAWB), 어업수산자원국(BFAR) 그 외 농업성의 관계 규제기관 및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는 각각 사전통고승인(PIC)을 제공하기 위한 제안서의 평가 및 효과적인 이익공유협상 시 자원제공자를 지원한다.

7.4 국가주민위원회(NCIP)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통고승인(FPIC)의 문서화 및 생물탐사협정에 따

른 이익공유협상에 있어서 자원제공자인 원주민을 주도적으로 지원한다.

7.5 생물탐사활동이 팔라완주에서 이행되는 경우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가 자원제공자 및 자원이용자를 주도적으로 지원한다.

7.6 보호지역 야생생물국(PAWB), 어업수산자원국(BFAR), 국가주민위원회(NCIP) 및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는 생물탐사활동 관련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공통의 보관 기관을 마련한다. 어떠한 관계자도 합법적이고 적절한 범위에서 해당 보관 기관에 있는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절차 및 요건

제8조 생물탐사협정 체결에 관한 기본 순서

8.1 생물탐사협정의 협상 및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a. 자원이용자는 제7조에 기재된 이행기관에 대하여 요건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국내 협력자 및 자원제공자와의 접촉에 있어서는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사무소에 조회가 있었을 때는, 모니터링의 목적으로 이행기관에도 알린다.
- b. 제7조에 기재한 이행기관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그 지역사무소는 자원이용자에게 생물탐사협정의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기재한 표준체크리스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의 적절한 제출처를 신청자에게 지시한다.
- c. 자원이용자인 신청자는 어업수산자원국(BFAR), 보호지역야생생물국(PAWB) 또는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에 표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1조에 정하는 신청료를 지불한다. 지역사무소가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 및 신청료납부를 지역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 d. 자원이용자는 제5장의 절차에 따라 자원제공자에게 사전통고승인(PIC) 또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통고승인(FPIC)을 요구한다.
- e. 자원이용자는 그 외 제6장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원제공자와 이익공유에 대해 협상한다. 사전통고승인(PIC) 또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통고승인(FPIC)의 부여는 이익공유의 조건만으로 할 수 있다.
- f. 자원이용자는 보호지역야생생물국(PAWB), 어업수산자원국(BFAR) 또는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에 대한 사전통고승인(PIC) 증명서 및 합의한 이익공유 조건의 요약문을 제출한다.
- g. 자원이용자는 표준약관(부속서 1)에 근거한 기타 관련 요건에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한다.
- h. 생물탐사활동이 복수의 관할지역에 걸친 종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 이행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모두 하나로 정리하고 신청서의 승인은 합동기술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한다. 당해 이행기관은 자원이용자와 제공자간에 합의한 조건을 담은 단일의 생물탐사협정 초안을 공동으로 작성한다.

- i. 단독 또는 공동의 기술위원회는 완전한 필요서류를 수령한 후 15 영업일 이내에 생물탐사협정 초안에 기재된 신청내용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심사한 생물탐사협정 초안은 승인 또는 기각의 제언을 붙여 서명자에게 회부한다.
- j. 이행기관은 가능한 경우 권고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의 승인 또는 기각을 결정한다. 승인의 경우, 자원이용자는 자원제공자와의 협상 조건을 존중하고, 이 가이드라인의 표준약관을 포함하여 서명자와 함께 생물탐사 협정에 서명한다.
- k. 자원이용자는 생태계 재생·이행 보증을 삽입한 후 샘플의 수집을 개시할 수 있다. 요금 기타 이익의 지불은 생물탐사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표준약관

9.1 생물탐사협정에는 협상에 의한 이익공유조건 외에 보칙 및 기타 기초적인 계약조건에의 준수에 관한 표준약관이 포함된다. 이 약관은 부속서 I에 나타낸다.

제4장 쿼터와 비용

제10조 샘플 수집

10.1 생물탐사협정은 표본 및 수집되는 시료의 양을 기재한다. 시료의 양은 부속서 III에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자원이용자가 적절한 자원목록에 근거하여 자원의 보전을 고려한 후에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2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은 생물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자동접근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원이용자가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지가 있음을 연구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청료

11.1 자원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적절한 실시 기관에 대하여 처리 비용으로서 500 필리핀 페소를 지불한다.

제12조 생태계 재생·이행 보증

12.1 신청자는 연구예산에 제시된 프로젝트비용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생태계 재생·이행 보증으로 넣는다. 이는 생물탐사협정의 서명 후 30영업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보증금을 넣기 전까지는 어떠한 시료도 수집할 수 없다. 보증금 넣기를 게을리 하는 것은 생물탐사협정 해제의 근거가 된다.

제5장 사전통고승인(PIC)

제13조 사전통고승인(PIC)에 관한 지침

13.1 자원이용자는, 원주민, 보호지역관리위원회(PAMB), 지방자치단체(LGUs), 일반 사인, 또는 현행 법 하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그 외의 기관 등 관계된 자원제공자로부터,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한다.

13.2 사전통고승인(PIC)은 다음의 기본절차에 따라 관계자원 제공자로부터 취득한다.

- a. 통지: 자원이용자는 원주민, 지방자치단체(LGUs), 보호지역관리위원회(PAMB), 사유지의 지주 또는 기타 관계기관에게 그 지역 내에서 생물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의향서(letter of intent)의 형태로 통지한다. 이 여기에는 수행될 활동을 모두 공개한 연구제안서 사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하며, 생물탐사협정의 신청을 제출한 것을 기재해야 한다.
- b. 지역협의(Sector Consultation): 자원이용자인 신청자는 보호지역관리위원회(PAMB), 바랑가이 또는 부족회의에 지역집회 개최를 요청하고 그 통지를 해당 집회의 적어도 1주일 전에 공시하거나 생물탐사를 예정하고 있는 지역 내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한다. 신청자는 또한 해당 지역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또는 방언으로 쓴 연구 제안서의 간략한 개요 또는 사본을 충분한 부수 준비하여 지역 집회에 제출한다. 그 개요는 목적, 방법, 기간, 이용 또는 채취하는 종 또는 표본과 그 수 또는 양, 승인된 생물탐사활동의 실시 전, 실시 중, 실시 후에 얻은 서로의 공평한 이익에 대해 기재한다. 그 밖에, 해당 활동이 결코 그 지역 내의 사회의 전통적인 자원의 이용, 또는 생존을 위한 자원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문언을 포함한다. 원주민이 관계하는 경우, 지역집회는 그들의 관습법, 관행 또는 전통에 따라 실시한다.
- c. PIC 인증서 발급: 보호지역관리위원회(PAMB) 의장 또는 바랑가이 장은 PIC 부여에 찬성하는 결정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PIC 증명서에 서명한다. 사유지의 지주 또는 기타 관계기관은 협의 후 30일 이내에 PIC 증명서를 발행한다. 원주민의 경우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통고승인(FPIC) 증명서의 발행은 원주민권리법(IPRA) 규정에 따른다. FPIC/PIC의 표준 양식을 부속서 IV로 첨부한다.

13.3 환경천연자원부, 농업부, 국가원주민위원회(NCIP) 및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의 대표 외,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비정부 조직(NGO) 및 주민 조직(PO)의 대표도 본조(a) 및 (b)항의 활동에 참가하여 PIC 증명서에 증인으로 서명할 수 있다.

13.4 원주민으로부터 취득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통고승인(FPIC)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은 원주민권리법(IPRA)의 관련규칙을 보충해야 한다.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통고승인(FPIC) 신청서에 명시되고, FPIC 인증서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13.5 팔라완주에서의 생물탐사활동의 경우, 자원 이용자는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로부터 전략적 환경계획(SPE)에 기초한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제6장 이익공유

제14조 기본 가이드라인

14.1 자원이용자는 자원제공자가 지명하는 대리인을 통해 자원제공자와 협상한다. 당해 대리인에 의한 결정은 정식 승인 프로세스가 제공되지 않는 한 자원제공자를 법적으로 구속한다.

14.2 대상 지역에 복수의 제공자 집단이 있는 경우, 각 집단은 교섭의 대리인 각 1명을 지명한다. 당해 대리인은 집단 또는 개별적으로 자원이용자와 협상할 수 있다. 다만, 자원이용자와 적절한 서명자간에 체결하는 협정은 1개만으로 하며, 거기에 모든 제공자 집단과 협상한 조건이 포함된다.

14.3 자원이용자 및 제공자는 후속 조항에 정한 금전적 이익의 지불 및 비금전적 이익의 제공에 관하여 합의한다.

14.4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생긴 이익으로 협상한 것은 자원이용자가 합의한 금액 및 합의한 기간에 적절히 중앙정부 및 자원제공자에게 지불한다.

- a. 생물탐사료는 이행기관에 지급되어 중앙정부의 세입이 된다.
- b. 선불은 자원제공자에게 지급된다.
- c. 로열티는 중앙 정부와 자원제공자 사이에 배분한다.
- d.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가 수령한 금액 중에서 배분을 받는다.

제15조 생물탐사료

15.1 생물탐사료의 최저금액은 생물탐사협정 1건당 3000달러로 한다.

15.2 생물탐사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증액 또는 조정하지만 최소 금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 a. 샘플링 방법이 야생동물의 살해 또는 파괴를 포함하는 경우
- b. 수집하는 종이 희귀 생물이거나 번식 또는 재생이 느린 경우
- c. 수집하는 종에 평균 이상의 상업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과거 조사에서 알고 있는 경우
- d. 수집하는 종이 해충, 또는 병원균 매개 유기체이고, 조사가 그 해충이나 매개 생물의 방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e. 생물 탐사가 전통 지식(TK)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는 경우.

15.3 외국의 협력자 또는 투자자가 없는 필리핀인 자원이용자의 경우 생물탐사료는 15.1조 및 15.2조에 따른 평가액의 10%로 한다. 자원이용자가 필리핀인이고 영리 없이 외국의 자금원조자로부터 자금제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감액요금의 적용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다만, 그 필리핀인 자원이용자가 그 후 상업투자자와의 제휴관계 또는 계약관계를 맺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차액의 90%를 지불한다.

15.4 자원이용자가 국내 연구기관에서 학술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생물탐사를 하는 필리핀인 학생으로서 외국의 협력자 또는 투자자가 없는 경우 생물탐사료는 15.1조 및 15.2 조에 근거한 평가액의 3%로 한다. 다만, 그 필리핀인 학생이 표본의 이용, 또는 연구 성과에 관하여 그 후 상업적 관심을 가진 사람과 제휴 관계 또는 계약 관계를 맺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차액의 97%를 지불한다.

15.5 생물탐사료는 적절하게 환경천연자원부, 농업부 또는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에 지불한다. 이 수수료는 필요에 따라 야생생물관리기금(WMF) 또는 보호지역기금(PAF)에 적용된다. 생물탐사료가 특정 기금에 할당되지 않은 경우 서명기관 간에 균등하게 분배한다. 자원 이용자가 각 기관에 지불해야 할 요금 중 어느 기관에 얼마를 지불하는지는 생물탐사협정에서 정한다.

제16조 금전적 이익

16.1 자원 이용자는, 수집한 샘플로부터 만들어진 제품, 또는 수집한 샘플로부터 유래된 제품이 시판되고 있는 한, 전세계에서의 총 매출의 2%의 최저 금액을 매년, 중앙 정부 및 자원 제공자에게 지불한다. 이 금액은 적절히 당사자간에 협상하여 높은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자원 이용자는 감사된 연차 총 매출액 보고서를 로열티 산정의 베이스로 서명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자원이용자가 제품의 판매자가 아닌 경우 당해 이용자는 판매자로부터 매출기록을 입수할 책임을 지고 해당 기록을 서명기관에 제출한다. 로열티의 25%는 중앙정부의 세입이 되어 적절히 환경천연자원부, 농업부,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에 직접 지급된다. 1건의 생물탐사협정의 서명기관이 복수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수령하는 로열티를 해당 기관간에 균등하게 분배한다. 로열티의 나머지 75%는 직접 자원제공자에게 지급된다. 로열티는 합의한 예정에 따라 중앙정부(이행기관을 통해) 및 자원제공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로열티 지불 예정은 자원이용자, 중앙정부(이행기관을 통해) 및 자원제공자간에 합의한다. 이 합의는 생물탐사협정에 통합된다.

16.2 선불금 : 자원이용자는 수집 기간 동안 수집 장소 1 개당 1000 달러를 매년 자원 제공자에게 지불한다. 이 지불은 로열티의 선불금으로 간주된다. 생물탐사를 하는 필리핀인의 자원이용자 및 학생이 외국의 협력자 또는 투자자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조 15.3 및 15.4와 같은 비율의 저비용의 적용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지불시기에 대해서는 자원제공자와 자원이용자간에 합의한다. 이 합의는 생물 탐사 협정에 포함된다.

제17조 기타 이익

17.1 자원이용자와 자원제공자는 위의 최소 이익 외에 다음과 같은 비금전적 이익에 동의할 수 있다.

- a. 생물 다양성 목록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 b. 자원 보전 활동을 위한 물품 및 장비
- c. 기술 이전
- d. 연수 시설을 포함한 공식 연수
- e. 대상 지역 관리와 직접 관련된 인프라
- f. 의료
- g. 기타 역량강화, 서식지 내 보전 및 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제18조 지불금의 반환

18.1 생물탐사활동에서 어떠한 이익도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자원이용자가 자원의 제공자 집단에 지불한 금전은 일절 반환되지 않는다.

제19조 외국의 자원이용자에 의한 필리핀인 협력자의 지명

19.1 이행기관은 요청에 따라 제품개발 또는 기술이전 과정에서 연구협력자로서 동료들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적격한 필리핀인 과학자를 외국의 자원이용자에게 추천한다.

19.2 국내 협력자가 생물탐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한 외국의 자원이용자와 생물탐사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공평한 이익공유

20.1 1개소의 수집지에 복수의 자원제공자 집단이 있는 경우, 제16.1조 및 16.2조에 정하는 이익은 생물 자원을 수집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리권을 행사하는 집단 및 해당 지역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집단 간에 균등하게 분배한다.

20.2 지역사회에 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해 관계 barangay 의회(Sangguniang Pambarangay)는 수령한 자금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대체 또는 보충 생활의 기회를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또는 환경보호만 사용되는 것을 확보한다.

20.3 원주민에 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는 원주민권리법(IPRA)에 따라 책정된 조상전래영역의 지속가능한 개발·보호계획(ADSDPP)에 따라 자금을 사용한다. ADSDPP가 없으면 국가 원주민 위원회(NCIP)는 그 규칙에 따라 자금의 적절한 처리를 결정한다.

제21조 상호 배타적인 약속

21.1 자원제공자 집단이 사전통고승인을 부여하는 조건으로서 자원이용자와의 사이에서 합의한 그 밖의 약속은, 그에 반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기 조항에 정하는 이익 및 요금과는 분리 독립한다.

제22조 수집지에의 진입

22.1 제공자 집단은 생물탐사협정의 기간 동안 수집 할당 및 수집 기간의 제한에 따라 자원 용자가 승인된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수집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자원 제공자에게는 관할 구역 내에서 자원이용자 및 연구 협력자가 실시하는 생물탐사 활동을 감시하도록 권고한다.

제7장 의무준수

제23조 보고 요건

23.1 자원이용자는 다음 항목을 기재한 연차 진척 보고를 관계 이행기관에 제출한다. a) 사전통고승인(PIC) 취득 상황, b) 샘플 수집 진행, c) 이익공유 협상, d) 이익 지급 진행, 또는 경우에 따라 생물 탐사 협정의 기타 규정. 연간 진척 보고는 다음 해인 1월 30일까지 제출한다.

23.2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원이용자는 준수 증거, 특히 사전통고승인(PIC)의 적절한 취득, 이익 공유에 관한 합의의 이행 및 수집쿼터에 대한 준수의 증거로서 다음 증명서 발행.

- a. 사전통고승인(PIC)의 적절한 취득에 대한 준수 증명서(부속서 VI)
- b. 생물탐사협정에 정하는 금전적 이익 또는 비금전적 이익의 자원제공자에 의한 수령 증명서(부속서 VII)
- c. 생물탐사협정에 정하는 수집쿼터의 준수에 관한 증명서(부속서 VIII)

모든 증명서와 관련된 자원제공자가 서명함과 동시에 환경천연자원부, 농업부, 팔라완주 지속가능개발위원회(PCSD)의 지역 대표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증명서는 연차 진척 보고에 첨부한다. 다만, PIC 취득증명서는 생물탐사협정의 신청 시 PIC에 첨부하여 이행기관에 제출한다. 자원 이용자는 적절히 사진 등 준수를 나타내는 다른 증거도 제출한다.

23.3 자원제공자는 필요에 따라 생물탐사협정의 규정 중 23.2조에 기재된 증명서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준수의 증거도 제출한다.

제24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감시

24.1 이익공유 합의가 공정하고 공평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협정 당사자 및 기

타 이해 관계자는 프로세스 지표 및 내용 지표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적절한 기술위원회는 이러한 지표를 사용하여 최종 평가를 내린다. 지표 체크리스트는 부속서 V에 있다.

제25조 현재 보고

25.1 개별 생물탐사협정(BU)의 현재 상태는 시행기관이 자체 또는 합동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한다.

제26조 외국에서의 감시

26.1 이행기관은 외국에서 실시되는 발명 및 상업화의 감시에 있어 외무부(DFA) 및 과학기술부(DOST)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양 부처는 외국 조직과의 생물탐사협정(BU)에 관하여 이행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를 받는다. 외무부(DFA)는 재외 대사관 및 공관을 통해 협정 위반을 이행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장려된다. 특히 외무부는 다음에 대해 외국 관계 당국에 강하게 요구하도록 장려된다.

- a. 생물탐사협정(BU)을 체결하지 않는 생물자원의 반입 방지
- b. 특허출원시 원산국 공개 및 생물탐사협정(BU) 제시 요구
- c. 수집자 또는 상업화하는 조직에 대한 법적 청구 수행 촉진

26.2 또한 외무부(DFA) 및 과학기술부(DOST)는 필리핀과 생물탐사협정(BU)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과의 관계 및 필리핀의 생물자원의 이용에 임하는 전문가학회 및 대학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도 장려된다.

제27조 시민단체의 참가

27.1 정부는 특히 NGO 및 PO와 같은 시민 단체가 생물탐사협정(BU) 실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인식하고 추진한다. 시민단체는 자신의 대처를 통하여 소정의 절차 준수, 특히 지역사회와의 협의 실시 및 PIC 증명서의 취득 프로세스, 수집 요건에의 준수를 감시할 수 있으며, 상업화 또는 발명이 외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외국의 네트워크를 통해 재외 필리핀 대사관과 협력하여 로열티 지불을 감시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28조 클리어링하우스 메카니즘

28.1 이행기관은 공동 보관기관을 통해 필리핀의 생물다양성협약 (CBD) 담당창구에 보고한다. 해당 창구는 그러한 관련 정보를 CBD 사무국 외에 필리핀이 체약국이 되어있는 조약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다른 국제기구에 보고한다.

제29조 자금

29.1 이 가이드라인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국가통합보호지역제도(NIPAS)법 및 야생생물법에 따라 적절히 종합보호지역기금(IPAF) 또는 야생생물관리기금(WMF)에 이행한다.

29.2 이 가이드라인의 실시 및 생물탐사활동의 감시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기관의 통상예산 또는 종합보호지역기금(IPAF), 야생생물관리기금(WMF)으로부터 지출한다.

제9장 제재 및 구제

제30조 분쟁해결

30.1 생물탐사협정(BU)의 조건에 위반, 특히 사전통고승인(PIC)의 취득과 소재수집에 관한 위반의 공식적인 주장은 이행기관에 제출한다. 이행기관은 일단 위반인정 후에 사실조사를 시작한다. 당해 기관은 사실조사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조사보고를 한다.

30.2 자원제공자 집단의 구성원은 모두 생물탐사협정(BU)에 대한 위반을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어떠한 개인도 체결된 BU의 위반에 관한 정보를 이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30.3 이익공유 조건의 해석 및 이행으로 인한 분쟁은 가능한 한 관련 자원이용자와 자원제공자 간에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31조 제재 및 벌금

31.1 생물탐사협정(BU)의 규정에 위반이 있는 경우, 협정은 자동적으로 해제 또는 취소되며 수집한 소재는 정부가 몰수하고 보증금도 몰수하며 필리핀 위반자에 의한 생물자원에 대한 액세스는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이 위반은 야생 생물법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현행법에 의한 행정상 및 형법상의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생물탐사협정(BU)을 체결하지 않고 생물탐사를 한 자에게는 무허가 수집의 벌금을 적용한다.

31.2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및 국제적인 미디어에 발표함과 동시에 실시기관으로부터 필리핀의 생물 다양성조약(CBD) 담당창구를 통해 적절한 국제감시기관 및 지역감시기관에 보고한다.

제10장 최종규정

제32조 규정의 재검토 의무

32.1 특히 이해관계자 간에 공유하는 이익의 가액을 결정할 때,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이행기관은 본령에 정하는 규정의 정기적인 재검토를 3년마다 실시한다.

제33조 분리조항

33.1 이 가이드라인의 특정 장, 조항 또는 규정이 헌법 위반 또는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도 나머지 규정은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된다.

제34조 폐지규정

34.1 1996년 환경천연자원부령 제20호는 폐지한다. 이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명령 및 규칙은 여기에서 폐지되거나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됩니다.

34.2 대통령령 제247호의 규정에서 야생생물법에 맞지 않는 것은 폐지로 본다.

제35조 효력

35.1 본 규칙은 국가행정등록국(ONAR)에 제출 및 관보 공표 후 즉시 발효한다.

알기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⑰

필리핀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인	국립생물자원관장
발행처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기획·집필	이준표, 박정훈, 안능호, 길현중, 배문환, 노진학
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국립생물자원관 2022

ISBN 978-89-6811-527-1 94360

발간등록번호 11-1480592-002020-01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알기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⑰

필리핀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책임운영기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비매품/무료
94360



9 788968 115271

ISBN 978-89-6811-527-1

ISBN 978-89-6811-304-8 (세트)